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

2015년 마 포 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 고 서



마포구 옴부즈만

이 보고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따라 마포구 옴부즈만의
연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5년 마포구 옴부즈만 활동 첫 해를 마무리하며...

2014년에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2015년 1월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마포구 옴부즈만이 출범한 이래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구민과 공무원의 간극을 매우면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찾아 구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구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청렴계약 감시·평가를 실시하여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옴부즈만은 주 1회 개최되는 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정례회의만으로는 옴부즈만의 활동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정례회의가 아닌 날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하고, 출근하지 못한 날에도 틈틈히 업무를 수행하여 옴부즈만 운영의 기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운영 정착을 위해 협조해 준 마포구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옴부즈만의 면담 요청이나 자료 제출 요구 시에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성실히 응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옴부즈만이 공무원을 귀찮게 하는 존재가 아닌 공무원과 함께 다양한 시각에서 구민 고충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 주었으면 합니다.

2016년에는 지난 1년간 운영결과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옴부즈만을 믿고 고충민원을 신청해 준 마포구 구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참신한 구정 발전을 위해 구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 3.

마포구 옴부즈만

김 순 도
김 철 기
이 수 복

+ 목 차

I. 옴부즈만 운영 개요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8
2. 구성 현황	9
3. 직무 및 권한	10
4. 정례회의	12
5. 업무 처리 절차	13

II. 옴부즈만 운영결과

1. 고충·반복민원 처리 주요 실적	16
2. 고충·반복민원 처리 주요 내역	18
3.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실적	21
4.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내역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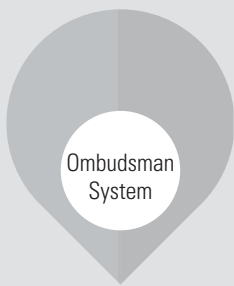
III. 옴부즈만 운영 사례

1. 고충·반복민원 처리 주요 사례	
1-1. ○○동 ○○번지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이의	28
1-2. ○○구역 재개발 사업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내역 등 요청	29
1-3. 신발생 무허가 건물 확인 요청	33
1-4. 과소 지급된 수용보상금 지급 요청	34
1-5. 오피스텔 신축 공사 피해 민원	38
1-6. 성산근린공원 생태통로 및 텃밭 조성사업 재고 요청	39

2.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사례	
2-1. 용강동 신축 복합청사 바닥 시공상태 현장점검	43
2-2~11. 2014년에 준공한 공공청사 시공상태 현장점검	46
2-12.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 약품 구매	50
2-13. 2014년 CCTV 통신망 구축 공사	53
2-14. 마포구민 체육센터 수배전반 구매	55
2-15. 마포구민 체육센터 전력 및 조명제어 구매	57
2-16. 마포구민 체육센터 무대장치 구매	58
2-17. 마포구민 체육센터 방송 음향장치 구매	60
2-18. 마포구민 체육센터 CCTV 구매	62
2-19. 망원동 473-5~35 외 1개소 하수관 개량 공사	63
2-20. 2015년 관광안내소 위탁사업자 선정 용역	65
2-21.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구매	67
2-22. 2015년 방범용 CCTV 설치 공사	69
2-23. 마포구 통합백업시스템 용량 증설	71
3.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상담	73
4. 기타 활동 사례	76

IV. 참고 자료

1. 주요 언론 보도 내역	78
2. 정례회의 주요 추진일지	83
3.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6
4.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02



I . 옴부즈만 운영 개요

-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2. 구성 현황
 3. 직무 및 권한
 4. 정례회의
 5. 업무 처리 절차
-

I. 옴부즈만 운영개요

0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가. 도입배경

- 시대 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인터넷 등이 발달하여 민원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건수도 많이 증가하였다. 또한 국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커짐에 따라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대한 국민의 불만 및 개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마포구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포구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나.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다. 추진경과

-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4. 4. 24)
-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4. 10. 16)
- 옴부즈만 공개모집 (2014. 11. 3 ~ 11. 7)
- 옴부즈만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2014. 11. 14)
- 제192회 마포구의회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결 (2014. 12. 19)
- 제1기 마포구 옴부즈만 3인 위촉 (2015. 1. 1)
- 제1차 옴부즈만 정례회의 개최 (2015. 1. 9)

02 구성 현황

가. 구성 및 지위

- 지 위 : 구청장 소속으로 독립적인 업무수행
- 임 기 :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촉 방식 : 공개모집에 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
- 운영 방식 : 전원합의제
- 구성 현황

성명	주요 경력
이수복 대표 ombudsman	·서강대학교 법학석사 ·前 마포구 공보과장
김순도 ombudsman	·前 예상건축사사무소 대표 ·現 디자인그룹예상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철기 ombudsman	·前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現 법무법인 세강 대표 변호사

나. 자격 요건 (조례 제3조 제3항)

-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03 직무 및 권한

가. 직무관할 (조례 제5조)

- 마포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마포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 마포구의 사무위탁기관 (마포구의 위탁사무에 한함)

나. 주요 직무 (조례 제4조)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상시적 청렴계약 감시·평가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ombudsman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다. 주요 권한

1) 고충민원의 조사 (조례 제14조)

- 고충민원을 조사할 때 직무와 관련하여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에 설명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구청장 소속하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조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정의 의뢰도 할 수 있다.
-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ombudsman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2) 시정의 권고 및 의견 표명 (조례 제16조)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3)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 표명 (조례 제17조)

- 고충민원을 조사·처리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4)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조례 제19조)

-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사항에 대해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5) 운영상황의 보고(조례 제20조)

-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04 정례회의

- 정례회의 : 주 1회 개최(2015. 12월 말 48회 개최)
- 기 능
 - 고충민원 조사 여부 및 담당 옴부즈만 지정
 - 고충민원 조사결과 공유, 논의 등 처리방향을 전원합의제로 의결
 - 우리구 주요 반복민원 검토, 구정 주요 현안 공유
 - 청렴계약 감시·평가 점검 및 검토
 - 관련 부서 및 민원인 의견 청취, 현장 조사 등



회의사진



현장조사

05 업무 처리 절차

가. 고충민원 접수 및 조사 (조례 제12조 ~ 제19조)

1) 고충민원 신청

-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가 방문, 인터넷 게시판, 우편 등의 방법으로 ombudsman에게 신청한다.
-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신청서)에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조사여부 결정

- 정례회의 시에 직접 조사여부를 결정하여 담당 ombudsman을 지정하고 민원인 및 관련 부서에 조사 실시를 통보한다. (단순민원은 관련 부서로 이첩한다.)

3) 민원조사 실시

- 조사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4) 조사결과 통보

- 조사가 완료되면 정례회의 시에 전원합의제로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며 관련 부서에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의견을 통보한다.
- ombudsman의 조치의견을 통보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ombudsman에게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통보한다.

고충민원의 반려 등

제15조(고충민원의 반려 등) ① ombudsman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반려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의회에 관한 사항
6.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ombudsman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실시 (조례 제21조 ~ 제23조)

1) 운영계획 수립

- 관련 부서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 한다.
- 옴부즈만은 제출 목록을 바탕으로 매년 활동범위를 정하여 청렴계약 감시·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감시·평가 실시

- 옴부즈만은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3) 감시·평가 결과 통보

- 평가가 완료되면 정례회의 시에 전원합의제로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관련 부서에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의견을 통보한다.
- 옴부즈만의 조치의견을 통보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옴부즈만에게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통보한다.

감시·평가 주요 검토 사항

- 사업추진의 타당성,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요건의 적정성
- 계약체결 과정의 문제 여부
- 설계의 적합성(도면 부실 여부 등), 설계변경 여부 및 필요성
- 추진의 적정성(이유 없는 공사 지연 여부 등)
- 시공품질 점검 및 설계도면과 시공현장 비교

Ⅱ. 옴부즈만 운영결과

-
1. 고충·반복민원 처리 주요 실적
 2. 고충·반복민원 처리 주요 내역
 3.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실적
 4.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내역
-

II. 옴부즈만 운영성과

01 고충·반복민원 처리 주요 실적

가. 총 평

- 옴부즈만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자 노력하였다. 옴부즈만 제도 운영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지난 1년간 일반민원이 아닌 다수인민원, 장기간 미해결된 반복민원을 처리하였기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실례로 25년 동안 지속된 반복민원을 20일 만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치의견을 표명하여 완전히 해결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308세대가 신청한 다수인민원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라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처리에 중요한 역할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나. 민원 접수·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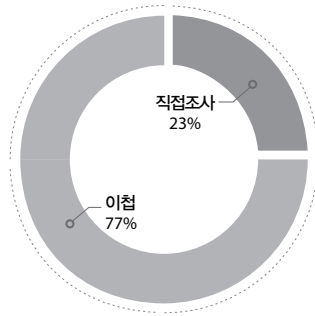
(단위:건)

계	민원 구분		조사 여부	
	신청민원	반복민원	직접조사	이첩
30	27	3	7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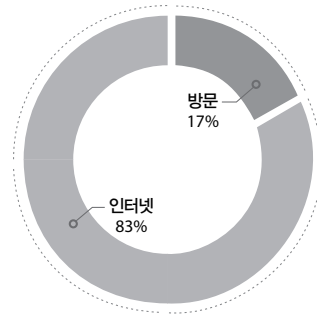
다. 민원 접수 방법 및 처리기간 현황

접수 방법(건)			처리기간(일)		
계	방문	인터넷	평균	최대	최소
30	5	25	18	151	0

민원 접수·처리 현황



민원 접수 방법 현황



라. 민원 분야별 현황

(단위:건)

계	일반 행정	산업 경제	청소 행정	주택 건축	도시 계획	녹지 환경	도시 교통	공공 시설	보건 위생
30	1	4	2	7	5	3	5	1	2

민원 분야별 현황



마. 민원처리 결과 현황

(단위:건)

계	시정요구	권고	의견표명	조정	조사 중 해결	불인용	진행 중
7		1	2	1	1	1	1

바. 조치의견에 대한 부서 조치결과 현황

(단위:건)

계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비고
3	2	1		

02 고충·반복민원 처리 주요 내역

가. 민원 처리 내역

연번	민원요지	조치의견	조치유형
1	민원인이 소유한 ○○동 ○○번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상의 토지면적이 달라, 지적 측량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은 부당 (처리기간 : 1. 19 ~ 2. 9)	- 민원 검토 중에 재차 민원이 제기되어 옴부즈만에서 관련 부서 주무관, 감사담당관 주무관, 지적공사 직원이 현장 방문하여 민원인을 이해·설득할 것을 권고 - 토지대장과 지적도상 면적의 상이는 관련법상 오차 범위 이내로 문제가 없으며, 지적 측량 부분은 지적공사, 점용료 부과 부분은 대한자산관리공사 주관 업무로서 각각 해당 공사에 확인토록 민원인을 이해·설득하고 종결	조사 중 해결
2	○○구역 재개발 사업 감정평가 결과, 재산이 지나치게 저평가되었으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감정평가의 타당성과 합당성에 대해 설명해 주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재감정을 해 줄 것 (처리기간 : 1. 29 ~ 3. 27)	- 감정평가 결과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조합에 행정지도할 것 - 또한, 재개발 사업 감정평가 시에 일괄평가가 아닌 개별평가 방식을 채택할 수 있게 관련법 규정을 개정 건의토록 권고	의견표명
3	○○구역 재개발 사업 내 ○○호는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음 (처리기간 : 3. 30 ~ 5. 11)	- 민원인은 ○○호가 전부 철거되고 다시 지어진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나 확인 결과, 전부 철거가 아닌 건축물을 일부 수리하여 사용한 것으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로 볼 수 없음	불인용

연번	민원요지	조치의견	조치유형
4	1990년 ○○동 도로개설공사 실시하면서 마포구의 지번 표기 오기로 인해 과소 지급된 수용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 (처리기간 : 5. 18 ~ 6. 8)	- 마포구의 착오로 인해 미지급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것	의견표명
5	○○아파트 인근 신축 오피스텔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발생, 조망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 (처리기간 : 7. 27 ~ 12. 28)	- 관련 부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건축 관계자를 면담하고 민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었음 - 이에 민원을 중재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 건축 관계자와 수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고 양자 간의 의견을 조정함	조정
6	“성산근린공원 생태통로 및 텃밭 조성사업”은 우범화 우려,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의 사유로 재고해 줄 것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안을 마련해 줄 것 (처리기간 : 11. 2 ~ 12. 28)	- 마포구의 당초 계획대로 터널을 조성하는 것은 폐쇄성에 의한 범죄 우려, 시야 차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의 사유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사업추진 시에 사람과 자연이 융합할 수 있는 개방형의 브릿지(Bridge) 형태로 개선하여야 할 것 - 또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	권고
7	○○동 ○○빌라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관리해 줄 것 (처리기간 : 11. 30 ~)	- 동 대표가 관리비 등을 합법적으로 징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 부분과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 중	진행 중

나. 기타 민원 이첩 현황

연번	민원요지	관련 부서
1	단속위주의 주차단속에 대한 이의	교통지도과
2	○○동 ○○아파트 경비원 관리 요청	주택과
3	○○동 ○○아파트 주변 주차단속 요청 등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토목과
4	합정동 간판 정비 요청	도시경관과
5	망원유수지 방면 음식점 영업장 외 영업 단속 요청	위생과
6	대부업체 '○○○○' 고발 요청	지역경제과
7	염리소방서 주변 흡연으로 인한 불편	지역보건과
8	합정동 신축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피해	건축과
9	성산동 음식물 쓰레기 투기 단속 요청	청소행정과
10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제 요청	도시계획과
11	성미산 '야호' 소리로 인한 불편	공원녹지과
12	○○동 ○○번지 보안등 및 CCTV 이전 요청	토목과, 전산정보과
13	집 주변 야생 고양이로 인한 불편	지역경제과
14	합정동 신축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	환경과
15	출근시간에 공사하는 도화동 간판 개선 사업으로 인한 불편	지역경제과
16	홍대입구역 방치 자전거 철거 요청	교통행정과
17	공덕동 주차단속 요청	교통지도과
18	호텔 축조 지상층 골조 공사 시 가림막에 국기 게양 가능 여부 등	도시경관과
19	휴일 철거공사 자제 요청	주택과
20	음식물쓰레기통 이전 및 도로변 휴탕물 물차청소 요청	청소행정과
21	상수동 주차단속 요청	교통지도과
22	아현시장 도로상 적치물, 불법 건축물로 인한 불편 등	지역경제과, 도시경관과, 건설관리과
23	마포구민체육센터 볼링장 이용 개선 요청	생활체육과

03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실적

가. 총 평

-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공공청사, 어린이집 등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소음 처리를 위한 정밀 보강 시공 요구’ 등 28건의 지적 사항을 조치하였다. 또한, 마포구에서 추진한 공공사업을 감시·평가하여 6건을 의견표명하고 3건을 권고하였다.
- 2016년에는 공사와 물품구매는 물론, 용역 분야에 대해서도 보다 활발히 감시·평가가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나. 청렴계약 감시·평가 실시 대상

총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의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구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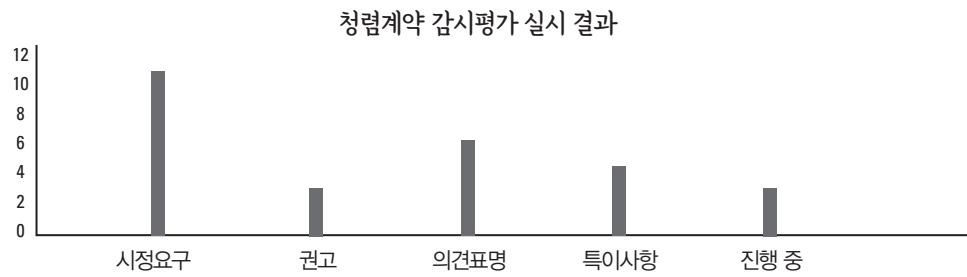
(단위:건)

구분	계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	26	17	1	8
현장점검	11	11		
서면감사	15	6	1	8

다. 청렴계약 감시·평가 실시 결과

(단위:건)

구분	계	시정요구	권고	의견표명	특이사항 없음	진행 중
계	26	11	3	6	4	2
현장점검	11	11				
서면감사	15		3	6	4	2



라. 조치의견에 대한 부서 조치결과 현황

(단위: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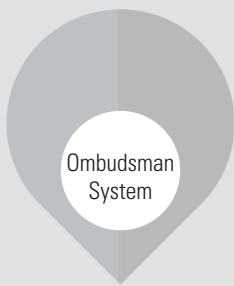
구분	계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비고
계	20	17	1	1	
현장점검	11	11			
서면감사	9	7	1	1	

04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내역

연번	사업명	조치의견	조치유형
1	용강동 복합청사 시공상태 현장점검	- 4층 강당 바닥의 소음처리를 위한 구조체 밀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정밀 시공 요구 등 6건 조치할 것	시정요구
2	○○어린이집 시공상태 현장점검	- 바닥재와 걸레받이 이음부의 실런트 누락 등 2건 조치할 것	시정요구
3	○○어린이집 시공상태 현장점검	- 주방 강화마루 바닥재 이음부위 벌어짐 등 3건 조치할 것	시정요구
4	○○어린이집 시공상태 현장점검	- 바닥재의 이음부위에서 일부 들뜸 현상 발생 등 3건 조치할 것	시정요구
5	○○어린이집 시공상태 현장점검	- 바닥재의 이음부위에서 일부 들뜸 현상 발생 조치할 것	시정요구
6	○○어린이집 시공상태 현장점검	- 바닥재 보완할 것	시정요구
7	○○어린이집 시공상태 현장점검	- 바닥재 보완할 것	시정요구
8	○○어린이집 시공상태 현장점검	- 바닥재의 이음부위에서 일부 들뜸 현상 발생 등 2건 조치할 것	시정요구
9	○○어린이집 시공상태 현장점검	- 천정지 덧시공할 것	시정요구
10	서교동 주민센터 시공상태 현장점검	- 수방에 대비한 차수막 위치 변경 등 3건 조치할 것	시정요구
11	성미산 체육센터 시공상태 현장점검	- 장애인 경사로 난간 높이 보강 등 5건 조치할 것	시정요구
12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 약품 구매	- 방제 약품이 '시설비' 항목에서 집행되었는데, 이보다는 '재료비'의 세부 항목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예산 항목을 '방역·방제'로 수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권고

연번	사업명	조치의견	조치유형
13	2014 CCTV 통신망 구축 공사	- 예산을 사고이월하는 것 보다는 되도록 예산 편성 년도에 공사를 준공할 것 - CCTV 관련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하여 CCTV 다목적 활용을 확대해 나갈 것	의견표명
14	마포구민 체육센터 수배전반 구매	- 긴급공고는 업체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꼭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행할 것	의견표명
15	마포구민 체육센터 전력 및 조명제어 구매	- 특이사항 없음	
16	마포구민 체육센터 무대장치 구매	- 긴급공고는 업체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꼭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행할 것	의견표명
17	마포구민 체육센터 음향 방송장비 구매	- 긴급공고는 업체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꼭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행할 것	의견표명
18	마포구민 체육센터 CCTV 구매	- 특이사항 없음	
19	망원동 473-5~35 외 1개소 하수관 개량 공사	- 공사 설계 시에 시험 굴착을 통하여 사전에 지장물을 파악하고 재개발 사업 구역 등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이유로 공사 구간이 변동되는 사례를 줄이도록 할 것 - 설계변경 시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할 것과 또한 하수관 개량 공사의 메뉴얼 작성·관리 요청	의견표명

연번	사업명	조치의견	조치유형
20	2015 관광안내소 위탁사업자 선정 용역	- 차량이동관광안내소 운영 시에 인근 경기도 지자체와 협조하여 마포구의 관광 브랜드를 더욱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것	의견표명
21	2015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구매	- 특이사항 없음	
22	2015 방범용 CCTV 설치 공사	- 특이사항 없음	
23	마포구 통합백업시스템 용량 증설	- 입찰참가 자격 실적 제한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검토할 것	권고
24	2015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 진행 중	
25	2015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 진행 중	



Ⅲ. 옴부즈만 운영 사례

-
1. 고충·반복민원 처리 주요 사례
 2.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사례
 3.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상담 사례
 4. 기타 활동 사례
-

III. 옴부즈만 운영사례

01 고충·반복민원 처리 주요 사례

○○동 ○○번지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이의

가. 민원개요

- 신청일 : 2014. 9. ~ 2015. 1. (인터넷, 유선, 방문 다수 제기)
- 민원요지 : 민원인 본인 소유의 ○○동 ○○번지의 토지대장상과 지적도상의 토지 면적이 상이하여 지적 측량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국유지 ○○동 ##번지를 점용하였다고 부과한 점용료 부과처분은 부당

나. 조사결과

마포구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은 적법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토지 면적이 다르다는 것이 이 건 점용료 부과처분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조치의견 : 조사 중 해결

민원 검토 중에 민원이 재차 제기되어 옴부즈만에서 민원인과 현장에서 만나 이해·설득할 것을 권고하였고, 2015. 2. 3 관련 부서 주무관, 감사담당관 주무관, 대한지적공사 마포지사 직원이 현장 방문하여 민원인과 면담하였다. 도로점용 면적은 마포구가 아닌 대한지적공사 마포지사에서 측량을 한 부분이므로 마포지사에서 측량한 결과를 믿지 못하면, 대한지적공사 본사에 문의하여 마포지사가 아닌 다른 지사에서 측량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을 안내하였고, 현재 ○○동 ○○번지는 ○○구역 재건축 사업 내이므로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은 대한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해당 공사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여 민원인을 이해·설득하고 종결처리하였다.

○○구역 재개발 사업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내역 등 요청

가. 민원개요

- 민원인 : 성○○ 외 45인
- 신청일 : 2015. 1. 29
- 민원요지
 - 조합 임원들이 조합원들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과 건설사의 하수인이 되어 일하면서 지분 쪼개기, 가건물 양수 양도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니, 자금운영 등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주택과 공무원들도 조합이나 건설사의 말만 들어주고 민원인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또한, 감정평가 결과 민원인들의 재산이 지나치게 저평가되었으므로 감정평가 설명회를 열어 감정평가의 타당성과 합당성에 대하여 알려주고, 감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감정을 해 줄 것과 관리처분계획은 당장 취소되어야 함

나. 조사내용

- 2015. 1. 26 : 주택과 의견 청취(1차)
- 2015. 2. 9 : 주택과 의견 청취(2차)
- 2015. 2. 16 : 민원 신청인 외 3인 의견 청취(1차)
- 2015. 2. 23 : 조합장 외 3인 면담
- 2015. 3. 2 : 민원 신청인 외 2인 의견 청취(2차)

다. 조사결과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에 따라 조합 측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료 공개를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2014. 12. 23 감정평가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약속했던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종전 자산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별지 서식에 따른 개별 감정평가·개별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마포구 주택과에서 조합 측과 두 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보낸 “종전자산 감정평가 설명회 등 따른 민원사항 알림”에 대하여 두 개의 감정평가 기관에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적인 법규만 나열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보하고 있는바, 그 동안 조합 측이나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열람과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금 청산자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감정평가 결과(개별현황, 평가 기준 명시, 감정내용 도해, 법령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공개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2) 현금 청산 대상자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며 중요한 재산이 어떤 이유와 요인들이 반영되어 어떻게 그런 가격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조합 측이 이를 현금 청산액의 근거로 삼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에 조합은 감정평가 법인과 적극 협조하여 현금 청산자들에게 형식적인 공개보다는 개별적인 감정평가 결과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설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현금 청산자들의 모임인 비대위 측의 주장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더라도 이들이 요구하는 충분한 자료 공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 3) 한편, 2015. 2. 23 (주)○○감정평가법인이 조합에 회신한 ○○구역 종전자산평가 관련 설명 회신문을 보면 “종전자산평가는 종후자산평가와 함께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에게 해당하는 평가이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 하거나 철회,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사유로 청산자가 된 분들에게는 구속력이 없다고 할 수 있고 청산자들에 대한 평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47조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절차에 의해 시행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조합 측에서는 회신 내용이 가지는 법적 의미를 청산 대상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
- 4) 조합과 현금 청산자들인 비대위 측은 상호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여야 하고 특히, 조합 측은 사업성의 문제 때문에 현금 청산자들에 대한 청산금을 과다 지출할 수 없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만약 비대위 측과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하고 자진 이주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지만, 사업 추진이 그만큼 늦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업 지연 기간만큼 많은 갈등에 따른 금융비용이 유발된다는 사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비대위 측을 어느 정도 이해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라. 조치의견 : 의견표명

- 1) 그 동안 정보공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현금 청산자들의 감정평가 결과 등 각종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특히,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조합 측이 감정평가 기관의 협조를 받아 감정평가 결과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 조합 측에 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을 의견표명한다.
- 2) 감정평가와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에 대하여 현재는 “시장, 군수(구청장 포함)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 결과가 보다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조합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1인, 현금 청산 희망자들을 포함한 토지 등의 소유자 1/2 이상이 의결하여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1인, 총 3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토록 주택과에 권고한다.
- 3)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같이 조합과 현금 청산자들 사이에 집단적으로 이해가 상반되는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감정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하도록 하고, 같은 규칙 제13조에 의한 감정평가 내용이 포함된 같은 규칙 제1호 서식의 감정평가서가 작성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이를 개정 건의할 것을 권고한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만 조합원은 물론 현금 청산자들도 본인들의 토지 등의 재산이 어떤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조합이나 관계 행정청과 불필요한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집단화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 구역 내의 토지 등의 재산평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려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공통사항 일괄 감정평가 방식은 조합원 또는 현금 청산자들과 갈등요인이 상존하여 나중에 이 문제로 행정청이 집단 민원으로 곤혹을 치루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을 심분 고려해 보면 관련 규정의 개정 건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 부서 조치결과

- 1) 현금 청산 대상자의 정보공개 요청 시에 적극적으로 공개토록 행정지도 하고 있으며, 현재 현금 청산 대상자의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3개 업체(조합1, 서울시1, 현금 청산자1)가 선정되었음. 지난 2015. 4. 30 감정평가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합(3인), 현금청산 대상자(3인), 감정평가사(5인)가 참석하였고, 협의보상을 위해 진행하는 감정평가 시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평가되도록 감정평가사에게 협조 요청하는 등 감정평가 관련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2) 종전감정평가 시점에는 현금 청산자 상호 간의 연대가 가능한 시점이 아니므로 현금 청산자들을 포함한 토지 등 소유자 1/20이상이 의결하여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현금 청산자 협의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에는 종전 감정평가금액 산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합, 서울시, 현금 청산자 등이 추천하는 3개 업체가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3) 현행 규정상 감정평가 시에 감정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되고 있고, 제1호 서식에 의해 감정평가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현금 청산자가 요청 시에 개별감정 평가서 발급이 가능한 사항이나, 만일 모든 감정 대상에 대하여 개별감정평가서를 발급할 경우 서류 발급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역기능도 있을 수 있어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음.

신발생 무허가 건물 확인 요청

가. 민원개요

- 신청 일 : 2015. 1. 12 ~ 3. 23 (총 6회 진정서 제출)
- 민원요지 : ○○동 ○○번지 무허가 건물은 2002. 4. 3 자 촬영된 서울시 항공사진을 보면 그 당시 확실하게 멸실된 무허가 건물임. 2000년 ○○동 가각정리사업 때 마포구에서 보상을 해 준 후 철거된 것임. 그리고 2003. 4월경 다시 촬영된 서울시 항공사진을 보면 철거된 후 다시 불법적으로 건축된 신발생 무허가 건물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위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것은 부당

나. 조사결과

- 1) 2001. 9월 그 당시 ○○동 ○○번지 소유자였던 A는 마포구에서 실시한 가각정리사업으로 인해 보상금을 선지급 받았고, 잔여 부분을 정리하여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받아간 보상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 그 후, ○○동 ○○번지는 소유권이 변경되어 2002. 8월 ~ 9월 개·보수 공사가 실시되었고 매수자 B는 주택과에 준공 신고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택과에서는 신발생 무허가 부분(개·보수한 부분)을 포함한 기존 무허가 건물의 지붕 및 벽체 개·보수 공사를 하게 하여 준공 검사까지 해줌으로써 이를 합법화시켜 주었다.
- 2) 가각정리사업에 의해 보상금은 지급 받고 저촉 부분이 철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된 부분에 대해 보상금 반환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보상금 지급 시기는 2001. 9월 경이라,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반환 청구권 시효가 완성되어 반환 청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신발생 무허가 부분은 2002. 10월 지붕 및 벽체 공사에 대하여 주택과에서 준공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합법화시켜 주었으므로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3) 다만, 무허가 건물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가각 부분은 구유지인바, 이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재무과에서 사업시행인가일로 부터 변상금을 부과 처분하였다고 하니, 더 이상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조치의견 : 불인용

민원인은 ○○동 ○○번지 기존 무허가 건물이 완전히 철거된 후에 다시 지어진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라고 주장하나 확인 결과, 기존 무허가 건물을 개·보수하여 주택과에 준공 신고를 하고 주택과에서 준공 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므로 이를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과소 지급된 수용보상금 지급 요청

가. 민원개요

- 신청일 : 2015. 5. 29
- 민원요지 : 민원인은 이미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불만을 제기하며, 도로개설 공사 관련 1990. 11월 과소 지급된 수용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본인 거주지 지번의 변경은 그 동안 형성되어 온 사회생활의 안정성이 해쳐지지 않도록 변경하지 말아달라는 것

나. 조사내용

관련 부서 및 민원인을 면담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1978. 12. 10 마포구 지적과에서는 지적공사 마포출장소에 마포구 ○○동 ○○-1(116㎡)를 도시계획선에 따라 ○○-1(63㎡)과 ○○-28(53㎡)로 분할측량을 의뢰하였고 측량이 실시되었다.
- 2) 1978. 12. 26 위 측량에 따라 마포구 ○○동 ○○-1(116㎡)은 ○○-1(63㎡)과 ○○-28(53㎡)로 지적 분할되어 토지대장에 등재되었다.
- 3) 그런데 지적도 작성 시에 오기로 인하여 ○○-1번지는 ○○-28번지로, ○○-28번지는 ○○-1번지로 지번의 위치가 지적도에 잘못 기재가 되었다.
- 4) 1989. 12. 12 위 잘못 기재된 지번에 따라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이 있었고,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된 토지는 ○○-1번지(63㎡)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8번지(53㎡)가 포함되게 되었다. 즉, 민원인은 ○○-28번지(53㎡)에 실제 거주하고 ○○-1번지(63㎡)는 수용되었는데, 공부상으로는 민원인이 ○○-1번지(63㎡)에 거주하고 ○○-28번지(53㎡)가 수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5) 이에 따라 1990. 11. 21 민원인의 피상속인 망 황○○는 실제 사업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된 63㎡에 대한 보상을 받았어야 함에도 53㎡에 대한 보상만을 받았다.
- 6) 이후 1999년경 지적도 폐쇄 전, 신원미상의 직원이 위와 같은 지번의 오기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직권으로 지적도상의 ○○-1번지와 ○○-28번지 지번의 위치를 수정하였다.

7) 하지만, 위 1999년경 지번의 오기를 정정할 당시 망 황○○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적게 지급된 내역과 등기부등본 등의 공적 서류에 병행된 오기를 인지하지 못하여 10㎡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한 점과 등기부등본 등의 공적 서류가 정정되지 못하였고, 현재 민원인은 실제 ○○-28번지(53㎡)에 거주하고 있으나 공부상 도로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 도로인 ○○-1번지(63㎡)는 민원인의 공부상 주소지인 상태이다.

8) 2013. 11. 27 건설관리과에서는 지적공부에 따라 민원인이 도로인 ○○-28번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민원인에게 도로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 사전 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3. 12. 11 건설관리과 담당 직원이 공부 및 현장을 확인한 결과, 민원인은 공부상으로 ○○-1번지(63㎡)에 거주하고 있고, 도로인 ○○-28번지(53㎡)를 무단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취소하였다.

9) 담당 부서에서는 위와 같은 오류가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초 지적 분할 후 지적도 표기 당시의 오기를 발견하고, 민원인의 피상속인 망 황○○에게 수용보상금이 과소 지급된 내역과 민원인이 수차례 마포구청에 위와 같은 민원을 제기해 온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다. 조사결과

1) 민원에 대한 해결책

현재 민원인은 실제로 ○○-28번지(53㎡)에 거주하고 있으며, 1990. 11. 21 지급받지 못한 10㎡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각종 공부를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하고 지급되지 못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면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 각종 공부의 정리 방안

먼저 지적도상의 ○○-1번지와 ○○-28번지 상호 지번의 위치를 변경하고, 다른 각종 공적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1번지의 면적 63㎡만 53㎡로 정정하면 민원인의 사회생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부를 모두 정리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공부는 모두 마포구청의 관할이므로 어렵지 않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의 면적란만을 63㎡에서 53㎡로 정정하면 되는데, 이는 토지대장을 정정한 후 마포구가 등기소에 촉탁을 함으로써 쉽게 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53㎡로 되어 있는 ○○-28번지 토지를 63㎡로 면적을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보상금의 지급관련

가) 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볼 때 마포구에서 10㎡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구에서는 민원인에게 10㎡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다만, 그 지급액을 정함에 있어서 보상금 지급 당시인 1990. 11. 21 지급되었어야 하는 10㎡에 해당되는 보상금에 물가 상승분과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방안과 현재의 시가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고, 전자와 관련하여서는 기지급된 재산세의 차감과 소멸시효의 문제가,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구의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 하지만 이 사건 민원이 구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이고, 이미 민원인이 과소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한 점,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행정관청의 잘못으로 인하여 구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원칙에 의하면 민원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현재 시가를 반영한 금액이어야 할 것이고, 현 시가는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 업체로부터 받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초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은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 한하여 수용개시일에 피수용 토지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10㎡에 대하여는 공부상 소유권이 마포구에 이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포구가 10㎡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 그 소유권은 민원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현재의 시가를 반영하여 10㎡에 대한 과소 지급된 수용보상금을 민원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옳은 해결책으로 보인다.

라) 더 나아가 현재 민원인도 이 사건 민원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분쟁의 발생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10㎡에 대한 시가를 미불보상금으로 지급하면서 민원인과 마포구가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멸시효 내지는 재산세의 환급, 부당이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 내지는 소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추후 분쟁의 여지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 조치의견 : 의견표명

- 1) 위에서 검토하고 첨부한 자료와 같이 마포구는 먼저 지적도상의 ○○-1번지와 ○○-28번지 상호 지번의 위치를 변경한 후, 다른 대장을 정정하여 ○○-1번지(63㎡)를 53㎡로 ○○-28번지(53㎡)를 63㎡로 정정하고, 정정된 토지대장을 근거로 등기소에 해당번지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면적란을 각각 정정하면 공부는 정리될 것이다.
- 2) 미지급된 10㎡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감정평가법인 2곳의 시가 감정을 산술평균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방지를 위하여 민원인과 마포구가 이의제기 및 소제기를 금하는 별도의 합의를 함으로써 민원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첨언하면 이 사건이 20여 년 전에 착오에 의한 지번의 오기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 담당 직원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구민의 권리가 구제되고 구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귀감이 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마. 부서 조치결과

옴부즈만의 의견표명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민원인에게 미불보상금을 지급하고 각종 공부를 정리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음.

오피스텔 신축 공사 피해 민원

가. 민원개요

- 민원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총 308세대 서명)
- 신청일 : 2015. 7. 24
- 민원요지 : ○○아파트 맞은 편 지점에 오피스텔 신축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발생, 조망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

나. 조사내용

- 1) 2015. 8. 3 : 관련 부서(건축과, 환경과) 면담
- 2) 2015. 8. 10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외 3인 면담 및 공사 현장 방문
- 3) 2015. 8. 19 : 건축 관계자 4인 면담
- 4) 2015. 8. 25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외 3인 면담
- 5) 2015. 9. 7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외 3인 및 건축 관계자 2인 면담
- 6) 2015. 10. 12 : 건축 관계자 2인 면담
- 7) 2015. 11. 2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외 2인 면담
- 8) 2015. 12. 28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외 2인 및 건축 관계자 4인 면담

다. 조치의견 : 조정

- 1) 이 민원은 ○○아파트 308세대가 신청한 집단민원으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 공사 현장과 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있어 신축 공사로 인한 피해가 그리 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부서에 민원을 이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관련 부서에 한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었고 집단민원인 점을 고려하여 일단 민원인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였다.
- 2) 민원인을 면담하고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시각, 청각, 기타 환경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입주민들이 신축 공사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건축 관계자를 만나 민원인들의 공사 피해 정도에 대해 설명하였고, 건축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공사 피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표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공사 피해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옴부즈만의 주도로 두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었다.

성산근린공원 생태통로 및 텃밭 조성사업 재고 요청

가. 민원개요

- 민원인 : 공00 외 34인
- 신청일 : 2015. 10. 29
- 민원요지 : 성산근린공원 생태통로 및 텃밭 조성사업 재고 요청
 - 터널은 우범화될 우려가 높음(CCTV는 전선 절단 우려 또는 검거를 낮음)
 - 시야 차단으로 교통사고 위험 증가(학교 후문 앞이라 매우 걱정)
 - 성서초 후문 쪽의 약 6m 성벽이 쌓여 보행자에게 위압감 조성, 경관 훼손
 - 130평 텃밭 조성에 5억원 투자는 예산 낭비
 - 사업 내용과 목적이 부합하지 않고 텃밭 조성 공간보다 서비스 공간이 더 많음
- 요구사항
 - 실시계획 및 착공 등 잠정 중단
 - 주민참여 협의체 구성(주민, 구청, (사)생명의 숲 등)하여 대안 마련해 줄 것

나. 사업개요

- 위치 : 성산1동 산 24-1일대(성산근린공원 내)
- 면적 : 약 1,200㎡(W30m×L40m)
- 사업목적 : 도로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성미산을 연결하는 생태통로 설치 및 텃밭 조성을 통해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학생들의 농촌체험·자연학습공간으로 제공
- 사업내용 : 생태통로 설치, 텃밭 조성, 주변 수목식재 등
- 생태통로 설치유형 : 파형강판 구조물공법(파형강판 W6.8m×L40m)
- 사업비 : 금500,000천원

다. 조사결과

이 사업은 도로로 단절된 성미산을 연결하는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통로 위에 텃밭을 만드는 사업으로 2년 전에도 마포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지만, 주민들의 반대 등의 사유로 무산되었고 2015년에 재추진하려고 하자 옴부즈만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도시디자인 관점에서 생태통로 설치 사례를 중점으로 하여 사업 추진의 적정성, 대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1) 성산(城山)의 의미

성산(城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1동에 있는 산이다. 성산(城山)이라는 이름은 한자어이며 순 한글 이름은 '성메' 또는 '성미'라고 불린다. 성산의 높이는 66m이다. 원래의 성산은 성산2동 까지 연결된 산이었으나 일제시대 때 홍제천 직강공사를 통해 산이 잘려 지금의 성산이 되었고 잘린 성산2동 쪽의 산은 새터산으로 불린다. 성산 안에는 성산근린공원이 설치되어 성산1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성산 주변으로 옛 마포구청, 성서중학교, 성서초등학교, 홍익초중고가 있으며 이런 학교들이 들어섬에 따라 산 면적이 좁아지고 있다. <출처 : 위키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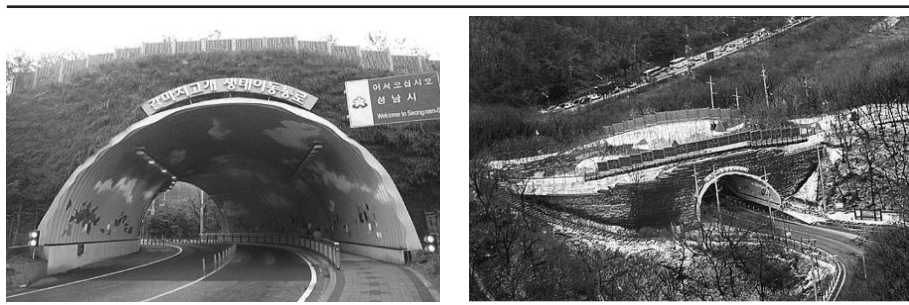
2) 생태통로의 개념

“생태통로”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동식물을 포함한 생명체의 환경 인식 차원에서 출발한 생태적 개념으로 도로·댐·수중보·하구언 등의 도시 시설로써 자연 환경이 변형되어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 동·식물의 이동을 돕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식생 등의 공간을 말한다. 생태통로 설치의 인구 팽창에 따른 도시 기반 시설의 확장으로 자연 환경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동·식물만의 생태적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의 생태 환경과 삶의 질까지 고려하여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과 사람의 관계로 확대 인식되어야 한다.

3) 생태통로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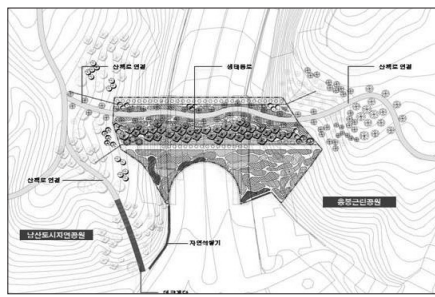
가) 성남시 갈마치 고개

생태통로 전면은 차량과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터널 형태로 건설되었다. 생태적 필요 기능은 충족되었으나, 통로가 굽어있고 통행 차량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차량 사고 및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시각적으로 폐쇄되어 범죄 발생 우려가 있어 도시디자인적 인 측면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나) 남산과 한남동 매봉산을 연결한 생태 통로

도로로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고 하부 통로 길이를 최소화하려는 설계를 시도하여 모던한 이미지를 추구하였으나, 터널 형식의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보다 적극적인 도시 디자인 접목이 필요하다.



통로 상부 평면



연결통로 정면

다) 부산시민 공원

부산시민 공원과 화자산 등산로 사이 양 지역 녹지 축을 연결한 생태통로로 사람과 동물들이 오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가운데는 사람의 보행 통로이며 양쪽 가장자리는 잔디 조경으로 동식물의 이동 통로이다. 다만 수목 식재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 성동구 올레길

도심속에 옛 자연의 축을 찾아 성동구 응봉산과 대현산을 연결하는 생태 통로(브릿지)로 사람과 자연이 융화된 도시디자인적 사례이다.



부산시민 공원



성동구 올레길

라. 조치의견 : 권고

1) 산책로 연결, 생태통로 설치, 텃밭 조성, 자연환경과 생태환경 복원 등 구민생활 편의와 힐링(Healing)을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던 본 사업은 도시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계획된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디자인적 계획안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터널 조성보다는 사람과 자연이 융합할 수 있는 생태통로 조성이 바람직하며, 옴부즈만의 개선점 및 권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현재 계획되어 있는 50 ~ 60m 길이의 터널보다는 도시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1/10 규모로 축소해야 함

나) 텃밭 설치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므로 철회하거나 타 지역에 설치

다) 폐쇄성에 의한 범죄 우려, 시야 차단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개방감과 시야가 확보되어야 하며, 야간 경관 조명도 설치해야 함

라)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므로 개방형의 브릿지(Bridge) 형태로 전면 개선하여야 함

2) 또한, 현재 이 사업 관련하여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마포구는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주민들의 고충, 요구 사항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마. 부서 조치결과

민원 제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성미산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및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 중에 있으며, 주민협의회에서 주민들의 고충,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된 대안 마련 등 최종 추진안이 도출되면 구청에서 검토·결정 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02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사례

용강동 신축 복합청사 바닥 시공상태 현장점검

가.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5. 3. 24 ~ 25, 30
- 점 검 자 : 옴부즈만 3명, 감사담당관 심사팀장 외 2명
- 점검내용
 - 설계 및 계약관리 : 설계변경 및 계약절차의 적정성
 - 품질관리 : 선정된 자재 규격 일치 및 사용 여부
 - 시공관리 : 바닥재 시공절차 준수 및 이행 여부

나. 점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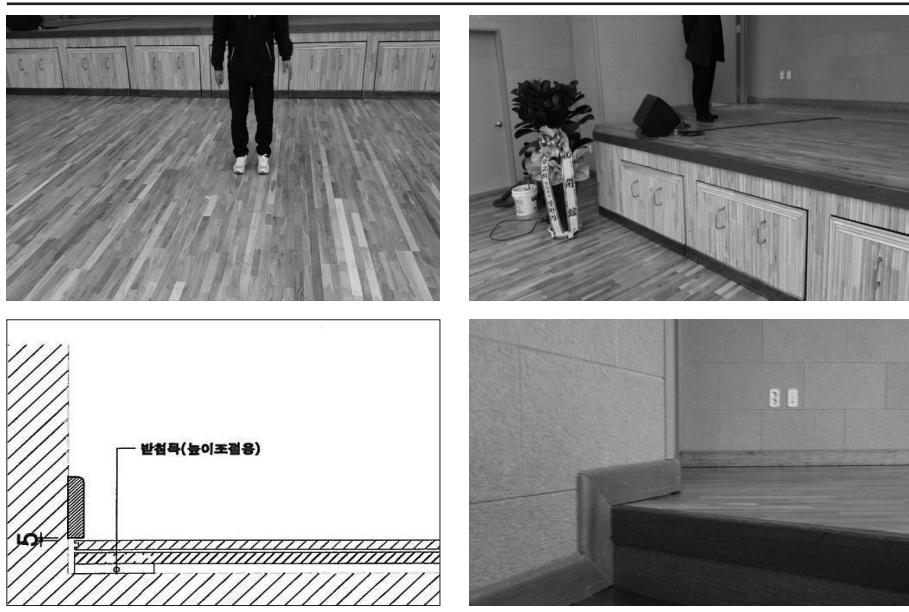
용강동 복합청사의 목적별로 바닥 시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종별 시방서에 따라 설계서대로 자재가 공급되고 승인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공 중 정밀시공이 부족하여 이에 대하여 일부 조치가 요구된다.

1) 4층 강당

- 자 재 : 오크원목($t=15\text{mm}$), 라왕 물딩을 사용하여 설계서 및 시방서대로 사용
- 공 법 : 바닥 플로어링(flooring) 공법
- 시공flow : 받침목→방진 지그블럭→아연도강판→플라스틱패드-합판-오크원목
- 점검결과
 - 무대 및 홀에 정밀시공이 미흡하여 국부적으로 ‘빠그덕’ 거리는 소음이 발생
(단상 위 2개소, 홀 4개소)
 - 강당 전반에 걸쳐 마룻널 및 마루결 부분의 신축 줄눈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지 못함
 - 단상에 오르는 계단(4단)은 목재 특성에 의한 휨 발생으로 구조체가 불안정
 - 또한, 강당 바닥과 벽면 사이의 걸레받이는 설계도면상의 거리($t=5\text{mm}$)를 유지하지 못한 채 설치되어 있음.

○ 시정사항

- 소음 처리를 위한 구조체 밀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정밀보강 시공이 요구됨
- 육안상 보이는 신축 줄눈의 이격은 구조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미관 확보상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정비가 요구됨
- 무대 단상 계단은 설계서대로 시공되어 있으나, 목재 특징의 휨 발생을 제어하고자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벽면 걸레받이는 설계도면상의 거리($t=5\text{mm}$)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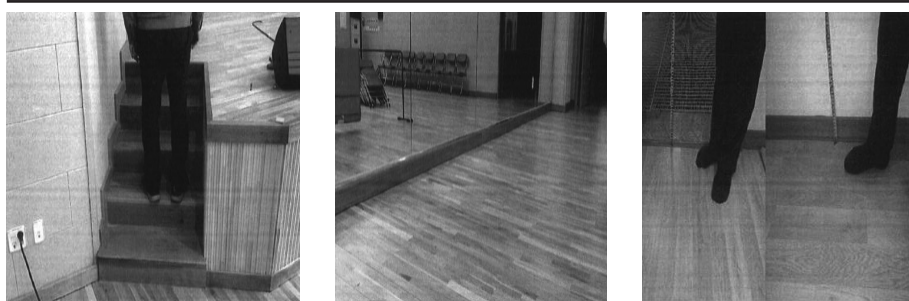


2) 1층 어린이집

- 자 재 : 치장목질 마루판(○○마루 클릭)
※ 목분을 가열 압축한 제품
- 공 법 : 건식 난방시스템(구들시스템), 강화마루(t=8mm)
- 시공flow : P-E폼→구들시스템(보온판→축열판→열전도판→마그네슘판)→마루
- 점검결과
 - 설계 및 시방서의 조건대로 난방을 위한 건식 구들시스템을 도입하여 시공되어 있으나, 구석 일부 및 출입구 마루곁 부분이 밀실하지 않아 바닥 꿀렁거림 및 침하가 발생함
 - 보육실 벽체 일부에서 강화마루와 걸레받이 간 이격 발생
- 시정사항
 - 바닥 평활도는 시방서의 규정상 시공 전·후 수평편차가 1mm/1m 이상일 경우에는 콤파운드나 석고빠데로 높여주거나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하여 수평을 맞춘 후 작업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구석 일부에 꿀렁거림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치가 요구되고,
 - 바닥과 벽체의 접합 부분의 걸레받이는 청소 시에 이물질 혼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계서대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됨



다. 조치결과 : 조치완료



2014년에 준공한 공공청사 시공상태 현장점검

가.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5. 4. 10 ~ 4. 27
- 점 검 자 : 옴부즈만 3명, 감사담당관 심사팀장 외 1명
- 점검대상 : 서교동 주민센터 등 10개소

(단위 : 천원)

연번	시설명	규모	총사업비	비고
1	○○어린이집	1층(104㎡)	220,396	
2	○○어린이집	1층(217㎡)	324,000	
3	○○어린이집	1층(308㎡)	43,797	
4	○○어린이집	1층(319㎡)	43,881	
5	○○어린이집	지하1/지상2 (385㎡)	-	
6	○○어린이집	지하1/지상2 (489㎡)	-	
7	○○어린이집	1층(320㎡)	43,747	
8	○○어린이집	1층(309㎡)	43,715	
9	서교동 주민센터	지하1/지상4 (1,636㎡)	3,931,369	
10	성미산 체육센터	지상2 (1,723㎡)	5,218,785	

- 점검방법 : 현장 중심으로 점검(설계도면 및 시방서 참고, 시설장 의견 청취 등)

◦ 점검내용

- 설계도 준수 여부(시방서, 자재적정 사용 등)
- 시설이용에 따른 안전 여부 등(화재, 환기, 침수 등)
- 기타 시설 이용자의 불편 여부 등

나.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연번	시설명	점검결과	조치결과
1	○○어린이집	- 바닥재와 걸레받이 이음부 실런트 누락(20cm) - 화장실 앞 데코타일 이음부 틈 (약 3mm) 벌어짐	
2	○○어린이집	- 주방 강화마루 바닥재 이음부위 (6mm) 벌어짐 - 복도 강화마루 밀어올림 현상 (1mm) 발생 - 화장실 타일 균열	 
3	○○어린이집	- 바닥재의 이음 부위에서 일부 들뜸 현상 - 주방환기 불량 - 가스레인지 점화장치 밸브 철거 필요	- 주방에 환풍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가스레인지 점화장치 밸브 철거 완료하였음.
4	○○어린이집	- 바닥재의 이음 부위에서 일부 들뜸 현상	- 조치 완료
5	○○어린이집	- 바닥재 보완할 것	
6	○○어린이집	- 바닥재 보완할 것	

연번	시설명	점검결과	조치결과
7	○○어린이집	- 화장실 타일 균열 - 화장실 및 주방(가스 포함) 환기 불량	 - 화장실 배수구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6년 중 주방에 환풍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임.
8	○○어린이집	- 천정지 덧시공 필요	
9	서교동 주민센터	- 수방에 대비한 차수막 위치 변경 필요 - 집수정 보강조치 필요 - 지하주차장 동선 불편	  

연번	시설명	점검결과	조치결과
10	성미산 체육센터	- 고막이 치장벽돌 침하 및 이격 발생 - 고막이 미장누락, 창틀 실리콘 미처리 - 외벽 치장 목재 창틀 접합 부분 창호틀 이격 발생 - 외부 난간턱 견출 및 마감 미처리 - 장애인 경사로 난간 높이 보강 (85cm)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 약품(어드마이어) 구매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4. 8 ~ 2015. 4. 14
- 사업규모 :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약품(어드마이어) 13,986개 구매
- 위 치 : 가로수 38개 노선, 녹지대, 공원 등
- 사업비 : 50,615,330원
- 사업목적 : 버즘나무에 발생하는 방패벌레로 인한 가로수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수간주사를 통하여 조기 방제함으로써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을 도모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유지
- 추진현황
 - 2015. 3. 10 : 2015년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사업 계획 수립
 - 2015. 3. 17 : 물품 계약 발주
 - 2015. 4. 8 : 물품 계약
 - 2015. 4. 14 : 물품 납품

나. 평가결과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공사를 발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공사비, 물품구매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50,323,700원을 지출하여 2,649주에 약품을 주사하였고, 올해는 총 사업비 50,615,330원을 지출하여 5,080주에 약품을 주사할 예정이므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예산 절감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1) 입찰자격 제한의 적법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 25조를 검토한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일반 입찰 방식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추정가격 5억원(마포구는 기초자치단체이므로 위 시행령 제24조 제2호 제나목에 따른 지방계약법 제5조 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미만의 물품 구매 계약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을 함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에 관한 고려가 있어야 하나, 이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이 건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약 5천만원이므로 주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제한하여 발주한 것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

2) 집행항목의 적절성

가) 이 사업은 마포구가 관리하는 가로수 38개 노선, 녹지대, 공원 등에 이미 식재되어 있는 버즘나무의 해충 방제약품을 구매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401-01 시설비' 항목에서 집행된 것인데, 혹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206. 재료비' 항목에서 집행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나)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206 재료비' 항목 아래 '6.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라고 기재되어 있고, '401-01 시설비' 항목 아래 '마. 조림·사방·조경 등에 대한 사업비(인건비, 재료비 포함)' 라고 기재되어 있어 본 건 사업의 경우 양자에 모두 포섭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전적 의미의 '방역(防役)'은 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을 막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전염되는 질병의 예방 등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건 사업의 경우, 식목방제 사업이므로 조림·조경 등에 대한 재료비로 지출되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된다.

다) 예산의 지출은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예산항목에 추상적으로 부합되는 지출이라면 일견 적법하다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 사업은 예산표 세부항목의 사전적 의미에 일견 부합하는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다만 이미 살펴보았듯이 '206. 재료비' 항목과 '401-01 시설비' 항목에 혼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입법적으로 그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할 것이다.

다. 조치의견 : 권고

1) 권고 사항

가) 이상과 같이 세출예산 집행 시에 지출항목의 포섭에 혼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예산 항목의 일부 수정이 권고된다.

나) '401-01 시설비' 항목 아래 '마. 조림·사방·조경 등에 대한 사업비(인건비, 재료비 포함)' 부분의 경우, 신규 조림 및 조경 사업으로 한정하여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기존 식목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경우 '206 재료비' 항목 아래 '6.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부분에 포섭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 이 경우 기술하였다시피 ‘방역’이라는 표현이 사람에 전염되는 질병의 예방활동으로 한정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식목 관리에 사용되는 용어인 ‘방제’라는 표현을 추가한다면 이 사업과 같은 경우 혼동될 소지가 줄어들 것이다.

라) 따라서 ‘206 재료비’ 항목 아래의 세부항목을 기존의 ‘6.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에서 ‘6. 방역·방제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이상과 같이 이 건 사업의 입찰 절차 및 예산 집행은 적법하나, 기술한 바와 같이 예산 항목의 일부 수정을 권고한다.

라. 부서 조치결과

2015년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사업」은 재료(방제약품)만을 구입 후에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시행하였으나, 추후 사업 시에 기간제 근로자의 수급 여건(경력자, 인원수)에 따라 전문 업체에 위탁 하는 등 사업시행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401-01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014년 CCTV 통신망 구축 공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2. 9 ~ 2015. 3. 18
- 사업규모 : 광케이블 포설(19Km), CCTV 통신망 연결(80개소)
- 위 치 : 마포구 관내
- 사업비 : 448,140,000원
- 사업목적 : 고화질 CCTV의 대용량 영상데이터를 전송함에 있어 높은 전송률이 가능한 광케이블 망으로 구축하여 CCTV 망의 효율성과 운용성을 높이고자 함
- 추진현황
 - 2013. 11. 5 : 2014년 다목적 CCTV 구축 계획 수립
 - 2014. 8. 18 : 2014년 방범용 CCTV 설치 계획 수립
 - 2014. 11. 11 : CCTV 통신망 구축 계획 변경
 - 2014. 12. 3 : 공사 계약 체결
 - 2015. 3. 31 : 준공검사

나. 평가결과

1) 본 공사 건에 대한 검토

가) 입찰공고의 적정성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7일 이상 입찰 공고를 실시하였고, 입찰 참가자격은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관계 법령에 의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공사의 사고 이월

- 「2014년 다목적 CCTV 구축 계획」에 따라 2014. 4. 28 ~ 5. 9, 2014. 6. 25 ~ 7. 2 두 차례에 걸쳐 동별로 CCTV 설치 장소를 선정하였다. 설치 장소는 선정기준(5대 강력범죄 발생 지역, 범죄발생을 염려한 다수인 민원발생 지역, 재개발로 인해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 및 설치 요청 민원 내역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2014. 11월 변경된 설치 장소와 타 부서의 추가 설치 및 공중선 정비요청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자 「CCTV 통신망 구축계획」을 변경한 후에 입찰공고를 진행하였다. 2014. 12월 (주)○○와 계약하여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5. 3월 공사가 준공되었다.

- CCTV 설치 사업은 설치 장소 선정에 대한 상반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설치 장소만 조기에 확정되더라도 사업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다.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기왕에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 설치 장소를 조기에 선정하여 예산을 사고이월 하는 것보다는 되도록 예산 편성 년도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 마포구 CCTV 설치·운영에 대한 검토

가) 위와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시정을 요구할 만한 특별한 지적 사항은 찾지 못하였으나, CCTV 설치에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마포구의 CCTV 설치·운영에 관하여 조금 더 검토해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CCTV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목적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마포구에서는 일부 CCTV를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CCTV 관련 사항에 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제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 5개의 자치구가 CCTV에 관해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각 부서별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CCTV의 통합에 관한 사항, 설치 장소·요건 및 일정, 모니터링실의 관리 운영 등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조치의견 : 의견표명

이 사업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만한 특별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되도록 예산 편성 년도에 공사를 준공할 것과 CCTV 관련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하여 CCTV의 다목적 활용을 확대해 나갈 것을 의견표명한다.

라. 부서 조치결과

2016년 방법용 CCTV 설치 및 통신망 구축 공사 시에는 설치 장소를 조기에 선정(2015. 12 ~ 2016. 2)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편성 년도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할 것이고, CCTV의 다목적 활용과 관련하여 「방법용 CCTV의 무단투기단속 활용 계획(전산정보과-6707(2015. 6. 17))」에 의거 138대의 CCTV를 무단투기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며, CCTV 관련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은 이미 제정되어 있는 5개 자치구의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음.

마포구민 체육센터 수배전반 구매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2. 17 ~ 2015. 10. 15
- 사업규모 : 특고압반 외 6종 구매
- 위 치 : 망원동 450-3 유수지 내
- 사업비 : 276,103,000원
- 추진현황
 - 2015. 1. 26 : 마포구민체육센터 수배전반 구매·설치 검토 보고
 - 2015. 3. 3 : 입찰공고
 - 2015. 3. 16 : 물품 계약
 - 2015. 10. 15 : 물품 납품 및 설치

나. 평가결과

- 1) 이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배전반)을 구매한 것으로 당초 중소기업청장이 인증한 성능인증서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여 제한경쟁입찰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성능인증서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이 있어 입찰방법을 재검토하여 지명경쟁입찰로 변경하였다. 입찰참가 업체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에서 20개 중소기업자를 추천받아 공고를 진행하였다.
- 2) 입찰공고 기간은 2015. 3. 4 10:00부터 3. 9 10:00까지 5일이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하고, 제4항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긴급공고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해당부서 건축과에서는 긴급공고 사유로 “마포구민체육센터의 고압 수전을 위한 배전반과 각 층에 설치되는 저압분전반을 납품하는 사항으로, 전기공사 공정상 4월부터는 분전반 자재가 현장에 납품되어야 원활한 작업이 가능함”이라고 들고 있다.

3) 지방계약법에 따른 일반적인 입찰공고 기간은 7일이고 긴급공고 시에는 5일이므로 긴급공고를 하면 2일의 기간이 단축되는데, 2일이라는 시간이 분전반 자재를 현장에 납품하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 사유가 꼭 긴급공고를 하였어야하는 사유였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 사업의 전체 공정을 놓고 보았을 때 기간 단축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작업이 2일이라는 시간을 다룰 만큼 촉박한 작업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4) 차라리 물품구매 예산을 2014년도에 편성하였더라면, 긴급공고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이 물품구매 건뿐만 아니라, 마포구민체육센터 관급자재 물품구매 2건 또한 긴급공고를 하였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 조치의견 : 의견표명

긴급공고는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향후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라. 부서 조치결과

물품 발주 시점에는 공사 준공기한이 15. 06월로 해당 물품이 긴급히 설치되어야 할 사항이었으나, 준공기한이 15. 10월로 연기된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긴급공고하여 입찰 공고기간을 2일 단축하는 것은 전체 공정의 단축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향후 긴급공고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겠음.

마포구민 체육센터 전력 및 조명제어 구매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2. 17 ~ 2015. 10. 15
- 사업규모 : 빌딩자동제어장치 1식
- 위 치 : 망원동 450-3 유수지 내
- 사업비 : 113,137,000원
- 추진현황
 - 2015. 2. 4 : 마포구민체육센터 전력 및 조명제어 구매·설치 검토 보고
 - 2015. 3. 6 : 입찰공고
 - 2015. 3. 24 : 물품 계약
 - 2015. 10. 15 : 물품 납품 및 설치

나. 평가결과

이 사업은 마포구민체육센터 전력과 조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양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전력 및 조명제어 시스템을 구매·설치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빌딩자동제어장치)으로 지정된 품목을 구매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달청을 통해 지명경쟁입찰 실시하였다. 입찰참가업체는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에서 5개 업체를 추천 받아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시정이 필요한 특이사항을 찾을 수 없었다.

다. 조치의견 : 특이사항 없음

마포구민 체육센터 무대장치 구매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2. 17 ~ 2015. 10. 15
- 사업규모 : HEAD CURTAIN 외 8종 구매
- 위 치 : 망원동 450-3 유수지 내
- 사업비 : 141,185,000원
- 추진현황
 - 2015. 3. 2 : 마포구민체육센터 무대장치 구매·설치 검토 보고
 - 2015. 3. 25 : 입찰공고
 - 2015. 4. 10 : 물품 계약
 - 2015. 10. 15 : 물품 납품 및 설치

나. 평가결과

- 1) 이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은 서울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자였다.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무대장치)으로 지정된 품목이고, 지역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한한 것으로 적정하다.
- 2) 입찰공고 기간은 2015. 3. 26 10:00부터 3. 31 10:00까지 5일이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하고, 제4항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긴급공고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해당부서 건축과에서는 긴급공고 사유로 “3층 다목적체육관 무대상단에 설치되는 무대장치는 고소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타공정(설비/전기/통신)의 고소작업 시기인 4월에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작업하기 위함”이라고 들고 있다.
- 3) 지방계약법에 따른 일반적인 입찰공고 기간은 7일이고 긴급공고 시에는 5일이므로 긴급공고를 하면 2일의 기간이 단축되는데, 2일이라는 시간이 고소작업을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 사유가 꼭 긴급공고를 하였어야 하는 사유였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 사업의 전체 공정을 놓고 보았을 때 기간 단축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작업이 2 일이라는 시간을 다룰 만큼 촉박한 작업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 4) 차라리 물품구매 예산을 2014년도에 편성하였더라면, 긴급공고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이 물품구매 건뿐만 아니라, 마포구민체육센터 관급자재 물품구매 2건 또한 긴급공고를 하였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긴급공고는 기업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꼭 필요한 경우만 행해져야 할 것이다.

다. 조치의견 : 의견표명

긴급공고는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향후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라. 부서 조치결과

물품 발주 시점에는 공사 준공기한이 15. 06월로 해당 물품이 긴급히 설치되어야 할 사항이었으나, 준공기한이 15. 10월로 연기된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긴급공고하여 입찰 공고기간을 2일 단축하는 것은 전체 공정의 단축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향후 긴급공고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겠음.

마포구민 체육센터 방송 음향장치 구매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2. 17 ~ 2015. 10. 15
- 사업규모 : 전관방송설비 외 6종 구매
- 위 치 : 망원동 450-3 유수지 내
- 사업비 : 218,087,000원
- 추진현황
 - 2015. 3. 2 : 마포구민체육센터 방송 음향장비 구매·설치 검토 보고
 - 2015. 3. 25 : 입찰공고
 - 2015. 4. 6 : 물품 계약
 - 2015. 10. 15 : 물품 납품 및 설치

나. 평가결과

- 1) 이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은 서울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자였다.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구내방송장치)으로 지정된 품목이고, 지역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한한 것으로 적정하다.
- 2) 입찰공고 기간은 2015. 3. 26 10:00부터 3. 31 10:00까지 5일이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하고 제4항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긴급공고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해당부서 건축과에서는 긴급공고 사유로 “3층 다목적체육관 설치되는 스피커 설치 는 고소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타공정(설비/전기/통신)의 고소작업 시기인 4월에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작업하기 위함”이라고 들고 있다.
- 3) 지방계약법에 따른 일반적인 입찰공고 기간은 7일이고 긴급공고 시에는 5일이므로 긴급공고를 하면 2일의 기간이 단축되는데, 2일이라는 시간이 고소작업을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데에 얼

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 사유가 꼭 긴급공고를 하였어야 하는 사유였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 사업의 전체 공정을 놓고 보았을 때 기간 단축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작업이 2 일이라는 시간을 다룰 만큼 촉박한 작업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 4) 차라리 물품구매 예산을 2014년도에 편성하였더라면, 긴급공고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이 물품구매 건뿐만 아니라, 마포구민체육센터 관급자재 물품구매 2건 또한 긴급공고를 하였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긴급공고는 기업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꼭 필요한 경우만 행해져야 할 것이다.

다. 조치의견 : 의견표명

긴급공고는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향후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라. 부서 조치결과

물품 발주 시점에는 공사 준공기한이 15. 06월로 해당 물품이 긴급히 설치되어야 할 사항이었으나, 준공기한이 15. 10월로 연기된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긴급공고하여 입찰 공고기간을 2일 단축하는 것은 전체 공정의 단축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향후 긴급공고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겠음.

마포구민 체육센터 CCTV 구매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2. 17 ~ 2015. 10. 15
- 사업규모 : 마포구민체육센터 내 CCTV 32대 구매
- 위 치 : 망원동 450-3 유수지 내
- 사업비 : 50,655,000원
- 사업목적 : 마포구민체육센터 시설물 안전 관리와 범죄 예방
- 추진현황
 - 2015. 2. 4 : 마포구민체육센터 CCTV 구매·설치 검토 보고
 - 2015. 3. 4 : 입찰공고
 - 2015. 3. 23 : 물품 계약
 - 2015. 10. 15 : 물품 납품 및 설치

나. 평가결과

1) 입찰공고의 적정성

이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은 서울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자였다.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영상감시장치)으로 지정된 품목이고, 지역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한한 것으로 적정하다.

2) CCTV 구매계획의 변경

가) 당초 2013년에 이 사업에 대해 검토할 시에는 조달청 3자단가 계약 방식으로 41만 화소의 CCTV를 구매하려고 계획했으나, 2015년에 구매 계획을 변경하여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고화질 200만 화소의 CCTV를 구매하였다. 단가가 정해져 있는 조달청 3자단가 방식보다는 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로 변경함으로써 발주금액은 당초 68,788천원에서 53,317천원으로 변경되어 약 15,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절약되었다.

나) CCTV의 설치 목적이 마포구민체육센터 내 방범과 안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화질이 방범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당초 설계 시기와 물품구매 시기가 2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최초 계획대로 구매하지 않고 CCTV 기술 사양의 발전을 고려하여 구매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고화질 200만 화소의 CCTV를 구매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 판단된다.

다. 조치의견 : 특이사항 없음

망원동 473-5~35 외 1개소 하수관 개량 공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4. 21 ~ 2015. 7. 19
- 사업규모 : 하수관 개량(D=1,000mm, L=255m)
- 위 치 : 망원동 473-5, 공덕동 385-94, 망원동 468-16번지 주변
- 사업비 : 429,570,000원
- 사업목적 : 망원동 473-5~35 외 1개소 주변의 하수관로가 노후·파손으로 인해 통수기능을 상실하여 집중호우 시에 노면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해당 하수관 개량을 통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
- 추진현황
 - 2015. 3. 12 :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에 예산 배정 요청
 - 2015. 4. 21 : 공사 계약 및 착공
 - 2015. 7. 17 : 설계변경 시행
 - 2015. 7. 28 : 준공검사

나. 평가결과

1) 공사 구간의 변경

가) 당초, 공덕동 385-79~467간 공사 구간은 하수관경 확대(D600mm⇒1,000mm, L=151m)를 계획하였으나, 시험굴착 결과 지장물 과다 간섭(도시가스, 체신, 한전특고압 등)으로 계획대로 공사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일부 구간은 하수관경 개량을 변경(D=1,000mm⇒D=700mm)하여 공사하고, 나머지 공사 시행이 불가피한 구간은 본 공사 구간과 접한 공덕동 385-99~385-94호 구간으로 대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나) 그러나, 공덕동 385-99~385-94호가 마포로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임을 확인하고 공사가 중복되는 문제점이 예상되어 공사 구간을 다시 변경하였다. 본 공사로 먼저 시행한 망원동 473번지 인근 지역인 망원동 468-16~28호간 기존 하수관의 확대개량(D=800mm→900mm)이 요구되어 해당 구간으로 공사 구간을 변경하였다.

2)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위와 같이 이 사업은 최초 계획한 공사 구간에서 하수관 개량 공사 실시가 어렵게 되어 2회에 걸쳐 공사 구간을 변경하였다. 첫 번째 구간 변경은 설계 시에 지장물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계 시에 지하시설물시스템 등을 통해 지장물을 확인하지만, 지장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정확한 방법은 직접 굴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장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당초 하수관 개량 공사를 통해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설계 시에 시험굴착을 통해 미리 지장물을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다면 시험 굴착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거나 하수관 개량 공사 메뉴얼을 작성하는 등 공사절차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나) 두 번째 구간 변경은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구역 내임이 쉽게 확인되는 사항인데 미리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든다. 그리고 이렇게 공사 구간이 변경되어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할 것이다.

다. 조치의견 : 의견표명

위에서 살펴본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니 향후 하수관 개량 공사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

- 1) 설계 시에 시험 굴착을 통한 지장물 파악
- 2) 하수관 개량 공사의 메뉴얼 작성·관리
- 3) 공사 구간 선정 시에 공익사업 구역 여부 확인하여 선정
- 4) 설계변경 시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준수

라. 부서 조치결과

- 1) 설계 시에 시험굴착 예산의 사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GIS조사 및 유관 기관 합동조사 등을 선행하여 지장물 현황 파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서울시 하수도분야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공사를 시행하겠음.
- 2) 또한, 재개발 재건축 등 사전협의 등을 통한 공익사업 필요 여부 확인절차를 거치고, 설계변경 시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준수하겠음.

2015년 관광안내소 위탁사업자 선정 용역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3. 1 ~ 2015. 12. 31
- 사업규모 : 마포관광정보센터, 차량이동관광안내소
- 사업비 : 122,620,000원
- 사업목적 : 마포구 방문 관광객들의 편의제공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관광안내소를 전문 민간기업에 위탁 운영하여 서비스품질 및 구 관광 브랜드 제고
- 추진현황
 - 2014. 12. 29 : 2015년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
 - 2015. 1. 16 : 입찰공고
 - 2015. 2. 9 : 재공고입찰
 - 2015. 3. 1 : 용역 계약 체결

나. 평가결과

- 1) “2015년 관광안내소 위탁사업자 선정 용역”은 민간 사업자에게 마포관광정보센터 및 차량이동관광안내소의 운영을 위탁하는 사업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제11조(업무의위탁)에 따라 관광안내소 위탁 운영에 선정된 사업자는 매니저, 관광통역안내사 등을 마포관광정보센터와 차량이동관광안내소에 배치하여 관광정보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자는 매월 관광안내소 월별 운영실적을 문화관광과에 보고하며, 문화관광과에서는 수시로 미스터리쇼퍼(Mystery Shopper)처럼 관광안내소에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적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조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 2) 마포관광정보센터는 공항철도 홍대입구역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마포구의 관광지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차량이동관광안내소의 경우에는 서울시 주요 관광지를 이동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3) 이 사업은 2014년 3월부터 민간 사업자에게 관광안내소를 위탁 운영하였고, 2015. 2월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2015.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입찰공고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두 차례 모두 2014년에 관광안내소를 위탁 운영하였던 (주)○○만

단독 응찰하여 유찰되었다. 현재 관광안내소를 위탁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에 관한 전문 민간기업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5. 1월 입찰공고를 하였고 유찰되어 2월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다시 유찰되어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기존 위탁 운영업체인 (주)○○○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른 입찰 참가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따라서, 이 계약에 관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보니 기존 업체는 관광안내소 위탁 운영에 적합한 업체로 보인다.

5) 마포구는 홍대뿐만 아니라 양화진 선교사묘원, 절두산성지 등이 위치한 서울 관광의 중심지이므로 관광안내소를 운영 전문성이 있는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함으로써 마포구의 관광 브랜드를 더욱 널리 홍보하고 관광안내소를 찾는 고객 만족률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차량이동관광안내소 같은 경우, 이미 마포구 새우젓 축제에 인근 고양시, 부천시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서울 전역뿐 아니라 마포구 인근의 경기도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하여 지자체 축제 시에 차량이동관광안내소가 찾아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마포구의 관광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다. 조치의견 : 의견표명

이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시정이 필요할 만한 특이사항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차량이동관광안내소 운영 시에 인근 경기도 지자체와 협조하여 마포구의 관광 브랜드를 더욱 더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을 의견표명한다.

라. 부서 조치결과

차량이동관광안내소는 기존 관광안내 기능에 관광홍보 기능을 추가하여 서울시 유명 관광명소 및 축제 등을 다니며 마포구 관광에 대해 홍보하고 있음. 외국인 관광객들을 주 타겟으로 관광홍보를 추진하고 있는바,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등 서울 시내 및 관내 관광명소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경기도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 강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축제·행사를 적극 발굴하여 차량이동관광안내소를 통한 마포구 관광홍보 강화 및 관광브랜드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구매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6. 30 ~ 2015. 11
- 사업규모 :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5대 구매·설치
- 위 치 : 서강대길 3 외 4개소
- 사업비 : 168,150,000원
- 사업목적 : 인력 단속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소통로 확보 및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
공하고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추진현황
 - 2015. 7. 10 : 설치 장소 선정 관련 1차 심의
 - 2015. 7. 28 : 설치 장소 선정 관련 2차 심의
 - 2015. 7. 31 : 설치 장소 선정 관련 최종 심의
 - 2015. 8. 13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계획 수립
 - 2015. 10. 7 : 조달 계약
 - 2015. 12. 9 : 납품 및 설치 완료

나. 평가결과

1) 설치 장소 선정

가)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 장소 5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총 3회에 걸쳐 “설치 장소 선정 심의회”가 개최되었다. 설치 장소는 2014. 5월부터 2015. 5월까지 인터넷 또는 유선으로 제기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요청 민원 총 101개소 중에 선정하였다. 설치 장소 선정 기준은 차량 통행량,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위험지역 등이었으며, 이면도로는 설치 대상 지역에서 가급적 제외하였다.

나) 최종 설치 장소 심의회 결과, ‘서강대길 3 하이마트’, ‘양화로 45 메세나폴리스’, ‘와우산로 48 로하스타워’, ‘월드컵북로 99 한국보간보’, ‘상암산로 48-6 JTBC’ 주변이 설치 장소로 선정되었다. 해당 장소들은 아파트 및 방송국 입주에 따른 교통량 증가 지역,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홍대 지역, 중국인 관광버스 민원 발생 지역임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 장소로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2) 구매 계약 방법

가) 해당 부서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3자 단가계약’ 방식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를 구매하였다. 이는 해당 부서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 한 업체를 선정하여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 형태이므로 수의계약 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업체들에 대해 사전조사를 거쳤다고 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당 부서와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서울시 등 다른 자치구 10곳에도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인식률, CCTV 사후관리 능력, 영업 소재지, 감사원 지적 사례 등을 종합하여 봤을 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의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인다.

다. 조치의견 : 특이사항 없음

2015년 방범용 CCTV 설치 공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7 ~ 2015. 9. 22
- 사업규모 : 방범용 CCTV 54개소 신규 설치
- 위 치 : 마포구 관내
- 사업비 : 449,924,000원
- 사업목적 : 강력범죄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구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범 취약지역, 안전 사고 위험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구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추진현황
 - 2015. 2. 25 :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선정
 - 2015. 5. 27 : 방범용 CCTV 설치 계획 수립
 - 2015. 7. 2 : 공사 계약 체결
 - 2015. 9. 21 : 공사 변경 계약 체결
 - 2015. 9. 22 : 공사 준공

나. 평가결과

- 1)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는 마포구에서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 해 옴부즈만에서는 이 사업과 유사한 “2014년 CCTV 통신망 구축 공사”에 대해 청렴계약 감시·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예산 편성 년도에 공사를 준공할 것과 CCTV 관련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하여 CCTV 다목적 활용을 확대해 나갈 것을 의견표명하였다. 전산정보과에서도 현재 방범용 CCTV를 무단투기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밝혀 왔다.
- 2) 이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민원 발생으로 설치 장소를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다만 선금급을 지급한 내역이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통신기술은 계약 체결 후에 마포구에 계약금액의 29.99%인 116,655,660원의 선금 지급을 신

청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20억 원 미만의 공사는 계약금액의 50% 범위 이내에 해당한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범위는 적절하고, CCTV 설치 공사에 필요한 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지급 신청 사유 또한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조치의견 : 특이사항 없음

이 사업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시정을 요구할 만한 특별한 사항은 찾지 못하였고, “2014년 CCTV 통신망 구축 공시” 감시·평가 ombudsman의 의견표명 사항을 전산정보과의 조치 계획대로 추후 통합 관제센터 구축 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

마포구 통합백업시스템 용량 증설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8. 31 ~ 2015. 11. 29
- 사업비 : 167,200,000원
- 사업목적 : 정보시스템 자료 증가에 따른 백업 용량 부족을 개선하고 향후 도입하는 온나라 시스템의 원활한 백업을 위해 통합백업시스템 용량을 증설
- 주요내용
 - 백업·복구환경 분석 및 백업자원현황 파악을 통한 시스템 설계
 - 백업 라이선스 증설(6TB ⇒ 27TB) 및 노후 통합백업장비 교체
 - 백업 정책 수립 및 백업
 - 백업·복구 테스트 및 실무 적용
- 추진현황
 - 2015. 8. 31 : 통합백업시스템 고도화 계획 수립
 - 2015. 10. 15 : 물품구매 계약 체결
 - 2015. 11. 26 : 물품 납부

나. 평가결과

이 사업은 '동일실적 제한'하여 제한입찰경쟁으로 입찰이 진행되었으며, 입찰참가 자격에 따라 입찰공고일인 2015. 9. 23 기준 최근 3년 이내 백업시스템 구축 실적 제출 가능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다. 해당 부서와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주)○○가 제출한 물품납품 실적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와 12. 6. 22 계약을 체결하고 12. 8. 6 납품하여 입찰참가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와 물품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다. 조치의견 : 권고

재무과에서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입찰참가 자격에 부적합한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라. 부서 조치결과

「마포구 통합백업시스템 용량 증설」의 경우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실적이 있는 업체가 극히 한정적이고,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실적증명서의 날짜 경과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3년 이내의 실적증명서를 보완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음. 향후 실적증명의 경우 기간 산정에 있어서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공고할 예정임.

03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상담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처리 및 청렴계약 감시·평가뿐만 아니라 옴부즈만의 전문성과 다양한 식견을 바탕으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마포구 업무 추진을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의 민원 처리와 추진 사항에 대해 마포구에 요청이 있을 시에 상담 및 자문 활동을 펼쳤다.

Q.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수입을 특별회계로 관리할 사유가 소멸되는지 여부

A. 관련 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임규정이 있는지 등을 살펴서 처리하여야 함

Q. 홍대 책거리 조성 협약 관련 자문 요청

A. 협약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약 체결은 무리이며, 조성 부서와 운영 부서의 입장이 모두 담긴 협약 내용이 보완되어야 함

Q.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 가능 여부

A. 공법관계에 대하여 사적 법률관계인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법률관계에 부합하지 않음

Q. 공덕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자문

A. 주차배치, 각 층별 레벨에 따른 주차장 단면 및 공사 범위, 도로 레벨에 따른 주차 진출입로 타당성 등에 대하여 자문하였음. 또한, 건축법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신축, 증개축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

Q. 2층에 어린이집 개원 가능 여부

A.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을 1층에 개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층에 개원하는 것은 불가하고 소송 등 다른 구제방법을 찾아 민원을 처리하여야함

Q. "2015 마포동이 모여라" 행사 추진 약정서 검토

A.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하였고, 보조금 정산에 관한 정산 필요 서류, 정산 시기 등 필요 사항을 추가하였음. 또한 집단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강구 조항, 행사 관련 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 삽입할 것

Q. 조례 개정 중에 위탁기간 협약서를 체결하여 통보한 경우 적용 시점

A. 조례 개정 후에 위탁기간이 시작되더라도 행정행위는 조례 개정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Q. 어린이집을 아파트 A동에서 B동으로 소재지 변경을 하려고하나 B동 건물주들이 입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이전을 반대하고 있음. B동 아파트 공동관리 규약에는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또는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 입주자 동의를 득하지 못할 경우, 소재지 변경 인가를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A. 가정어린이집 소재지 변경 인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소재지 변경인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인가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어린이집 설치 반대 등 주민 민원을 사유로 불허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임으로 변경인가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인가해야 함

Q. 구립 위탁 어린이집 모집 공고 결과 1개 업체만 신청을 하여 더 많은 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재공고를 고려 중인 경우, 재공고 시에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

A. 「영유아보육법」에 재공고에 대한 규정이 없고 재공고를 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재공고 시에는 처음 공고기간과 똑같이 20일을 준수하여야 함

Q. 게스트하우스 지정 신청 취하에 따른 투자 비용에 대해서 마포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손해 비용 중 위약금에 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A. 게스트하우스 투자 비용의 보상에 대해 관련 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민원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고 다만, 위약금 관련 부분은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함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불가함

Q.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예전 인가 조건을 또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A. 한 번 부여한 부관을 다른 인가행위에 또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임



- Q.** 불이익처분 내용이 법률에는 행정행벌로 조례에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두 처분의 병과가 가능한지 여부
- A.** 법률의 벌칙 조항(행정형벌, 징역 또는 벌금)과 조례의 원인자부담금은 그 처분의 성격 및 목적 등을 달리하므로 두 처분을 병과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Q.** 「의료급여법」 제31조(소멸시효)에서 대지급금 관련 소멸시효 중단사유로는 대지급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 및 독촉으로 규정되어 있음. 현재 대지급금 체납자에게 임의고지액으로 분할하여 매 월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고 이중 일부는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전혀 납부가 되지 않는 건도 있음. 분할고지액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A.** 분할고지액마다 각각 독촉고지를 하고 체납이 되면 각각 독촉고지 이후 기산일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산점도 분할고지액별로 따로 따로 계산하여야 함

04 기타 활동 사례

가.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 1) 일 시 : 2015. 10. 6
- 2) 참석자 : 마포구 옴부즈만 3인,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4인 등
- 3) 개최결과 : 마포구 옴부즈만과 인근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옴부즈만의 운영 방안 및 활동상을 공유하고 지역 옴부즈만 활성화 방안, 서울시 옴부즈만과의 협의체 구축 등을 논의하였다.

나. 마포중앙도서관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석

- 1) 일 시 : 2015. 10. 7
- 2) 참석결과 :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면접평가 위원 선정 및 면접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관여하여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

- 1) 일 시 : 2015. 10. 14
- 2) 참석결과 : 옴부즈만 협의체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또한 현재 옴부즈만, 고충처리위원회, 호민관 등 옴부즈만의 용어가 다양하므로 용어의 통일 방안을 제안하였다.

라.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참석

- 1) 일 시 : 2015. 12. 11
- 2) 참석결과 : 신정4동 신축공사 관련 민원 등 장기 미해결 고질민원 현장 방문 및 해결 방안 논의하였다.

IV. 참고 자료

-
1. 주요 언론 보도 내역
 2. 정례회의 주요 추진일지
 3.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4.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IV. 참 고 자 료

01 주요 언론 보도 내역

뉴스1 2015. 1. 7



마포구, 옴부즈만 도입으로 외부감시 강화

변호사·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 3명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변호사·건축사·전직공무원 3명으로 '마포구 옴부즈만'을 꾸려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외부 전문가가 행정을 감시하는 제도로 19세기초 스웨덴에서 시작해 전세계 선진국가에서 두루 채택하고 있다.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김철기 변호사, 김순도 건축사, 이수복 전직공무원 등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 3명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감시·평가해 계약 이행의 청렴성을 제고하게 된다. 또한 장기 미해결 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해소한다.

임기는 2년으로 주1회 정례회의를 거쳐 민원조사 여부, 옴부즈만별 안건 배정, 조사결과 처리 등을 전원합의제로 결정한다.

마포구 옴부즈만에 고충 민원을 내고자 하는 주민은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구 홈페이지 옴부즈만 게시판或利用하거나 구청 옴부즈만실에 방문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옴부즈만의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ی겠다"고 말했다.

아시아일보

2015년 01월 08일
06면 (지역)

마포구, 옴부즈만 도입으로 외부감시 강화

변호사·건축사·전직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 3명 위촉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변호사, 건축사, 전직공무원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마포구 옴부즈만'을 꾸려 올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옴부즈만은 행정내부를 외부에서 감시하는 제도로, 19세기 초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선진국가에서 두루 채택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도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례가 정한 옴부즈만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김철기 변호사, 김순도 건축사, 이수복 전직공무원 등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총 3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옴부즈만의 직무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단계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 감시, 평가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로 신청한 고충 민원의 조사, 처리 △반복되는 미해결 민원에 대한 조사, 조정 등이다.

이를 통해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

을 제3자적 입장에서 조사해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조정? 해소하고, 구에서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해 발주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계약이행의 청렴성을 제고하게 된다.

한편, 마포구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내고자 하는 구민은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마포구 홈페이지 내 옴부즈만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구청사 내 옴부즈만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정남 기자

시민일보

2015년 01월 08일
10면 (지역)

공공사업 옴부즈만이 감시·평가

마포구 변호사·건축가등 3명 위촉.. 주 1회 정례회의 열어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공공사업 전과정의 감시·평가를 옴부즈만을 통해 실시한다.

구는 이달부터 변호사, 건축사, 전직공무원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마포구 옴부즈만'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3자의 입장에서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해 외부인의 눈으로 행정내부를 감시하고자 실시된다.

옴부즈만의 직무는 ▲일정규

모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단계부터 준공까지의 전과정 감시 및 평가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로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반복되는 미해결 민원에 대한 조사와 조정 등이다.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주 1회 정례회의를 통해 민원조사 여부, 옴부즈만별 안건 배정, 조사결과 처리 등을 전원합의제로 결정한다.

한편, 마포구 옴부즈만에 고충

민원을 내고자 하는 구민은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구 홈페이지 내 옴부즈만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구청사내 옴부즈만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홍섭 구청장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옴부즈만의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수현 기자 smkh86@siminilbo.co.kr

아시아일보

2015년 07월 27일
06면 (서울)

고충민원 해결사 '마포구 옴부즈만'

갈등 조정부터 구정 아이디어까지 척척

구민 A씨는 25년 전 지번 표기 오류로 인해 도시계획사업 관련 보상금이 적게 지급돼 계속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올해 5월 마포구 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를 접수한 옴부즈만은 당시의 관련 문서 및 법령 등을 검토한바 지번 표기 오류와 관련된 각종 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적게 지급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해결방안을 구에 권고해 민원을 해결했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을 바로잡아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올해 1월부터 운영중인 마포구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행정내부를 외부에서 감시하는 제도인 옴부즈만 운영을 위해 올 1월 건축, 법률, 행정의 전문가들인 이수복 전직공무원, 김순도 건축사, 김철기 변호사 등 3명을 위촉하고, 주 1회 정례회의를 통한 민원조사 여부 결정, 옴부즈만별 안건배정 및 조사결과 처리를 하고 있다.

옴부즈만의 직무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단계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감시하고 평가하며,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로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처리하는 일을 맡는다. 또한, 반복되는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도 조사와 조정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마포구 옴부즈만은 올 상반기에만 '재개발 감정평가 결과 상세내역 요청' 등 고충민원 총 14건을 접수해 4건을 해결하고, 나머지 건은 조사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개발 관련 다수민원을 조사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구민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감정평가는 일괄평가방식이 아닌 개별평가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는 고충민원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권의토록 구에 권고하기도 했다.

또한, 관내 신축예정 복합청사 등 공공시설 11개소를 현장 점검해 지적 사항 25건을 적발하고, 이를 개선토록 구에 권고하는 등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도 펼치고 있다.

한편, 마포구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내고자 하는 구민은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마포구 홈페이지 내 옴부즈만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구청사 8층 옴부즈만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용수 기자

新亞日報

2015년 07월 27일
05면 (서울)



마포구 읍부즈만<사진 가운데 3명>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을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있다.

‘마포구 읍부즈만’ 고충민원 해결사 역할 특목

변호사·건축사·전직공무원 3인방 미해결 민원 조정·해소

서울 마포구민 A씨는 25년 전 지번 표기 오기로 인해 도시계획사업 관련 보상금이 적게 지급돼 계속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올해 5월 마포구 읍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를 접수한 읍부즈만은 당시의 관련 문서 및 법령 등을 검토한 바 지번 표기 오기와 관련된 각종 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적게 지급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해결방안을 구에 권고해 민원을 해결했다.

서울 마포구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 잡아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올해 1월부터 운영중인 마포구 읍부즈만이 고충민원의 해결사 역할을 특목히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구에 따르면 행정내부를 외부에서 감시하는 제도인 읍부즈만 운영을 위해 올 1월 건축, 법률, 행정의 전문가들인 이수복 전직공무원, 김순도 건축사, 김철기 변호사 등 3명을 위촉하고, 주1회 정례회의를 통한 민원조사 여부 결정, 읍부즈만별 안전배정 및 조사결과 처리를 하고 있다.

읍부즈만의 직무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단계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감시하고 평가하며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로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처리하는 일을 맡는다. 또한, 반복되는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도 조사와 조정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마포구 읍부즈만은 올 상반기에만 ‘재개발 감정평가 결과 상세내

역 요청’ 등 고충민원 총 14건을 접수해 4건을 해결하고, 나머지 건은 조사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개발 관련 다수민원을 조사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구민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감정평가는 일괄평가방식이 아닌 개별평가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는 고충민원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권의토록 구에 권고하기도 했다.

또한 관내 신축예정 복합청사 등 공공시설 11개소를 현장 점검해 지적 사항 25건을 적발하고, 이를 개선토록 구에 권고하는 등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도 펼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마포구민체육센터도 완공시 많은 주민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만큼 시공 상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꼼꼼히 실시할 예정이다.

이수복 마포구 대표 읍부즈만은 “시행초기라 아직 미흡한 점이 적지 않으나 고충민원을 듣고 해결해달라며 찾아오는 구민들의 말씀을 듣고, 직접 조사해 민원을 해결했을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더불어 구정 현장에서 행정감찰관 역할 뿐만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을 함께 제시해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해결사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 읍부즈만에 고충민원을 내고자 하는 구민은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마포구 홈페이지 내 읍부즈만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구청사 8층 읍부즈만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준철 기자 jcllee@shinailbo.co.kr

서울신문

2015년 07월 28일
14면 (서울)

고충 해결사 '마포 옴부즈맨' 인기

서울 마포구에 사는 A씨는 25년 전 지번 표기를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사업상 보상금을 적게 받았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월 '마포 옴부즈맨'에 도움을 청했다. 옴부즈맨은 당시의 관련 문서와 법령 등을 검토, A씨가 덜 받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표기 오류 해결방안을 구에 권고했다.

이처럼 지난 1월 운영을 시작한 마포구 옴부즈맨이 고충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구는 옴부즈맨이 올 상반기 총 14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4건을 해결하고 나머지 건을 처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마포 옴부즈맨은 ▲공공사업 전 과정

감사·평가 ▲구민 30명 이상이 신청한 민원에 대한 집중조사 및 처리 ▲반복되는 미해결 민원의 조사·조정 등 업무를 맡고 있다. 구민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상반기에 옴부즈맨은 관내 신축예정 복합청사 등 공공시설 11곳을 현장 점검해 25건의 문제를 적발해 구에 개선을 권고했다. 재개발 관련 민원 처리에도 힘을 쏟았다. 구민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감정평가는 일괄평가가 아닌 개별평가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구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권의하도록 구에 권고했다. 또 올해 하반기 준공될 마포구민체육센터의 시공상태를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02 정례회의 주요 추진일지

제5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5. 2. 9)

■ ○○구역 재개발 민원 관련 주택과 면담

- 참 석 자 : 주택과 재개발팀장, 담당 주무관
- 주택과 의견
 - 현재 재개발 구역 내 종교부지 건으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감정평가 업체 2곳의 감정은 적법 절차에 의하여 감정되었기 때문에 감정내용을 하나 하나 지적해가며 이를 따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님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는 예정대로 진행 할 것
 - 감정평가 기준일은 사업인가 고시일인 2012. 1. 17인데 반하여 민원인들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한 재감정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음
 - 갈등 해소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이며 한계가 있음

■ 옴부즈만 조사 대상으로 의결

- 2015. 1. 29 접수된 이 민원에 대하여 옴부즈만에서 직접 민원인들과 조합의 의견을 조율할 것이며, 우선 민원인 측(비대위) 3명을 다음 정례회의 때 면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합 측 관계자 3명을 면담하기로 의결함
- 비대위에 면담 일정을 통보하고, 조합 측은 주택과를 통하여 통보하기로 하였음
 - 비대위 면담 예정
 - 일 시 : 2015. 2. 16
 - 인 원 : 비대위 측 3명
 - 조합 면담 예정
 - 일 시 : 2015. 2. 23
 - 인 원 : 조합 측 3명

제6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5. 2. 16)

■ ○○구역 재개발 민원 관련 민원인 면담

- 참석자 : 박○○ 고문, 성○○ 상가위원장, 이○○ 어르신, 이○○ 사무국장
- 민원인 측(비대위) 의견
 - 주택과에 2013. 10. 실태조사 결과 등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구했으나 서울시 답변을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음
 - 2013. 12. 더 이상 실태조사를 하지 못하고 관리처분계획 작성에 착수
 -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련 종전자산 감정평가 가격이 너무 형편없이 나왔으며,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공시지가보다 못함
 - 현금청산 금액으로는 인근으로 이사도 못하는 수준임(특히 70, 80대 노인들은 주거문제 우려)
 - 감정평가 시에 담보물평가 방식으로 평가하였는데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해야 함
 - 감정평가 관련 서류 정보공개 요구에 제대로 응하고 있지 않음(조합원 명단, 용역 계약서, 시방서 등 공정한 자료 공개를 요구)
 - 관련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며,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재산인데 감정평가서를 보면 단 2줄만 나와 있음
 - 감정평가 설명회를 개최하여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이해시켜 주길 요청
 - 현금청산 대상자들에게도 사업추진 일정과 내용 등을 통보해 주었으면 함
- 옴부즈만 의견
 - 재개발 정착률이 10% 정도이며, 재개발, 재건축 시에 수평이동이 안됨
 - 조합과 시행사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며, 민원인들과 소통이 되어야함
 - 감정평가 가격은 협의 보상 시에 재평가 될 것

제7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5. 2. 23)

■ ○○구역 재개발 민원 관련 조합 측 면담

- 참석자 : 조합장, 감사, 사무장, 정비업체 직원
- 조합 측 의견
 - 비대위 중에는 정치 세력이 끼어 있으며, 각종 소송에서 조합 측이 승소하였음
 - 비대위 측은 감정평가 금액을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고 있음
 - 사도는 대지 가격의 30%로 평가되는데 ○○구역에는 사도가 많음
 - 종전자산 감정평가 설명은 개별적으로 했으며, 모든 자료는 '클린업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음

- 비대위 측은 지적 측량도 거절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음
- 옴부즈만 의견
 - 비대위, 조합 측간에 신뢰가 있어야 함
 - 감정평가서 공람기간을 주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8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5. 3. 2)

■ ○○구역 재개발 민원 관련 민원인 면담

- 참석자 : 김○○ 부위원장, 성○○ 상가위원장, 박○○ 고문
- 민원인 측(비대위) 의견
 - 비대위 측에서 물건을 선정하여 샘플로 감정평가를 하겠음
 -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 연기 요청
 - 개별적인 감정평가 결과 통보를 요청했고 주택과도 동의하였지만 조합 측과 감정평가 업체 측의 감정평가 결과의 통보 내용을 보면 법규만 나열하는 식임

제12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5. 3. 30)

■ 청렴계약 감시·평가 운영 계획 논의

- 감시·평가 대상 : 총 공사비 3억원 이상의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구매
- 논의 사항
 - 사전평가·사후평가를 다 실시하되 과정 또는 결과에 중점을 둔 사후평가 위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
 - 사업 중요도·사업비 변경 등에 따라 평가 대상을 확정하고 평가대상 예정 사업의 일정에 따라 평가 진행
 - 재무과 및 주관 부서의 사업 관련 서류를 일체 제출받아 검토하고 필요 시에는 현장확인도 병행

■ 용강동 복합청사 현장 점검

- 점검 내용 : 4층 강당, 1층 구립어린이집 등의 바닥 시공, 무대 돌림목 시공 상태 등 점검
- 지적 사항
 - 목재 시공이 약간 조잡하고 바닥 시공 중 정밀시공이 미흡
 - 걸레반이와 바닥과의 이격 발생, 4층 강당 무대 목재 색깔 상이

제14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5. 4. 13)

■ 신발생 무허가 건물 확인 요청 민원 검토

- ○○구역 내의 ○○동 ○○번지 무허가 건물에 관한 반복민원을 옴부즈만 논의 사항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함
- 우선 정확한 자료 준비 및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지적의 변동 사항
 - 서울시에 의뢰한 향측 판독 결과가 회신되면 이를 이용하여 스케일로 연도별 무허가 건물의 면적 변화 추이가 확인 가능함
 - 각 해당 지번의 토지대장 발급하여 참고

■ 2015년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운영 계획 검토

- 가.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계획 수립 완료
- 나. 감시·평가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한 논의
- 다. 2015년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운영계획 각 부서 시달
- 라. 단위 사업 선정 및 선정된 사업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 마. 옴부즈만 조사 안건 배정 및 조사 실시 등

■ 공공청사 시공상태 현장점검 계획

- 김순도 위원 의견
 - 구청에서 시공하는 각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용도별(예컨대 어린이집)로 ‘표준 바닥재 선정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어린이집의 바닥 시공은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어린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목재나 부드러운 탄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함
(예컨대 원목, 원목 코팅제, 루바 타일 등 부드러운 재질로 선택)
 - 망원 유수지에 건축 중인 마포구민 체육센터 바닥은 설치 시공 전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사전에 바닥 설치에 대한 설계도서 재질 등을 검토하여 보완하는 방향의 옴부즈만 활동이 필요함

제15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5. 4. 20)

■ 공공청사 시공상태 현장점검

- 참 석 자 : 감사담당관 심사팀장, 담당 주무관
건축과 담당 주무관, 가정복지과 담당 주무관
- 어린이집
 - 바닥 재질 선정 문제, 부풀어 오름
 - 구입가는 비록 높더라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도모하여 제대로 된 바닥재 선택이 중요
- 어린이집
 - 주방의 후드 설치 문제(작동상 문제)
 - 주방의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음식조리 냄새가 유아들 방으로 베어 들어감
 - 주방의 가스레인지 기능 문제(뚜개를 작동하면 화재 경보기 작동)
 - 출입구 인조 대리석 미끄러운 부분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카펫을 까는 것이 좋음
- 서교동 주민센터
 - 주차장 입구 부분과 차수벽 등 종합적인 배수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기능 보완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실무자 회의 개최
 - 감사담당관 심사팀, 건축과 건축시설팀과 실무자 회의 개최
 - 우선 시정된 결과를 지켜보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 가능토록 노력하기로 함
 - 별도 예산 문제가 수반될 것으로 보임
 - 구체적인 문제점 및 보완 내역은 건은 김순도 위원이 별도 점검 결과서 작성 하여 제출하기로 함

제17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5. 5. 4)

■ 신발생 무허가 건물 확인 요청 민원 검토

- 참 석 자 : 도시경관과 담당 주무관, 건설관리과 건설행정 팀장, 담당 주무관
- 검토 내용
 - 항공사진,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동 ○○번지는 기존 무허가 건물이며 조합원 자격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 2002. 4. 3 ~ 2002. 9. 23 사이에 기존 무허가 건물을 일부 수리

한 것으로 확인됨

- 2002. 8 ~ 2002. 9 ○○동 ○○번지 지붕수리 및 벽체보수 공사를 시행하고 주택과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함
- 동 번지 내 일부 신발생 무허가 부분의 개·보수 신고를 구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제19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5. 5. 18)

■ 2015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 약품(어드마이어) 구매 적정성 검토

- 입찰참가 자격 제한(지역 제한)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함
- 다만, 예산과목 206. 재료비 항목에 6.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 6. 방역·방제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로 수정하는 것을 개정 건의토록 함

■ 과소 지급된 수용보상금 지급 요청 민원 검토

- 과거 마포구의 착오로 지적도 작성 시에 지번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어 잘못 기재되었고, 도로개설공사 관련 10㎡에 대한 보상이 누락되었음
- 이는 전적으로 마포구의 착오로 야기된 문제이므로 이를 바로잡아 시정해야함
- 사전에 민원인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각종 공부에 면적 표시란을 정정하여야함
- 현재 김철기 위원이 법률 검토 중임

제21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5. 6. 1)

■ 과소 지급된 수용보상금 지급 요청 민원 검토

- 참석자 : 건설관리과 보상팀장, 민원인(홍○○, 석○○)
- 민원인 의견
 - 그 동안 마포구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해 고통이 컸음
 - 억울한 일이 없도록 원만히 처리하여주기 바람
- 건설관리과 의견
 - 마포구의 착오로 인하여 고통을 준 점 사과드림
 -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옴부즈만 의견

- 감정평가 금액을 바탕으로 과소 지급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함
- 과거 마포구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현재의 담당 팀장이 책임감을 갖고 솔직하게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 잡은 점은 바람직한 업무처리 태도로 판단됨
- 김철기 위원이 주관하여 조사 보고서 작성 중

제23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5. 6. 13)

■ 2014년 CCTV 통신망 구축 공사 검토

- 참 석 자 : 전산정보과 담당 주무관
- 검토내용
 - 각 부서별 설치 위치 독점에 따른 효율성 문제
 - 부서 간 협조 문제(전산정보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청소행정과 등)
 - 조례 제정 등 시스템 구축 문제
 - 한국전력공사 협조 문제

제24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5. 6. 22)

■ 마포구민 체육센터 물품구매 검토

- 참 석 자 : 건축과 담당 주무관
- 옴부즈만 의견
 - 당초 조달청 3자단가 계약 방식으로 41만 화소 CCTV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계획을 변경하여 200만 화소의 CCTV를 구매하면서 예산까지 절감한 것은 매우 잘한 일로 평가됨
 - 음향 방송장비 설치 등은 CCTV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할 것
 - 그러나, 물품구매 3건의 구매 예산을 2014년도에 편성하지 않고 2015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당초 체육센터 개관일인 2015년 6월에 맞춰 납품받기 위해 긴급공고를 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긴급공고는 많은 업체들의 실질적인 입찰참가 기회를 잃게 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임

제25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5. 6. 29)

■ 과소 지급된 수용보상금 지급 요청 민원 검토

- 참 석 자 : 건설관리과 보상팀장, 지적과 담당 주무관
민원인(홍○○) 외 2인
- 검토내용
 - 건설관리과에서 과거 구의 행정 착오로 인해 과소 보상된 부분에 대해 민원인에게 유감을 표했음
 - 민원인도 이로 인해 그 동안 많은 불편을 겪었지만 민원 해결을 위한 보상팀장과 읍부즈만의 적극적인 노력에는 고마움을 표함

■ 청렴계약 감시·평가 검토

- 현재 검토 중인 “2014년 CCTV 통신망 구축 공사” 외 5건에 대해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부서에 의견표명 예정

제27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5. 7. 13)

■ 마포구민 체육센터 공사 현장 방문

- 참 석 자 : 생활체육과 담당 주무관, 건축과 담당 주무관, 공사 관계자
 - 체육관 및 무대 플로어링 공사 시공 계획에 대해 검토
 - 시공업체((주)○○)는 체육시설 플로어링 전문업체로서 시공계획, 공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에 질의응답
 - 향후 바닥 P.E 필름 깔 후 장선 설치한 다음에 다시 현장 방문하여 시공상태에 점검 예정

제28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5. 7. 27)

■ 망원동 473-5~35 외 1개소 하수관 개량 공사 검토

- 참 석 자 : 치수과 담당 주무관
- 읍부즈만 의견 : 하수관 개량공사의 경우 지하 매설물이라는 특수한 사정은 이해는 하지만, 공사 시행 전에 굴착 검사를 해보지도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간섭이 나타나면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등 당초 의도한 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함

제30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5. 8. 10)

■ 오피스텔 신축 공사 피해 민원인 면담

- 참 석 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사, 관리소장, 주민
- 민원인 의견
 - 공사 착공 전에 아파트 측에 일체의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현재 공사 분진으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레질을 해야 함
 - 먼저 착공한 시공사 A측은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런 태도는 결국 집단민원을 야기시킬 것임
 - 현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이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은 제기하지 않은 상태임

■ 오피스텔 신축 공사 피해 민원 현장 방문

- 참 석 자 : 환경과 생활환경 팀장, 건축과 담당 주무관
감사담당관 민원소통 팀장, 담당 주무관
- 현장 방문 결과 : 지대가 높은 ○○아파트 쪽으로부터 아래에 있는 공사 현장으로 내려 뺀은 검은 판석 암석층이 있어 발파 시에는 강도에 차이가 있겠지만 발파에 따른 진동이 아파트 쪽이나 공사 현장 인접지 주택에 전달될 것으로 보임
- 다음 정례회의 때 건축관계자 측과 면담 예정

제31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5. 8. 19)

■ 오피스텔 신축 공사 피해 건축 관계자 면담

- 참 석 자 : 건축과 담당 주무관, 건축 관계자 4인
- 시공사 A 측의 의견
 - 오피스텔 시공 시에 저소음, 저진동 굴착공법인 PRS 무진동 항암공법과 미진동 발파공법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고 주별 또는 수식 계측을 통해 과다한 소음발생 집중관리하고 있음
 - 공사 현장 출입구에 고압 살수차를 설치·운영하여 분진 피해 최소화
 -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
- 옴부즈만 의견
 - 시공사는 위와 같이 모든 것이 기준치 내에 있으며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정해 진 범위 내에서

시공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느끼는 소음과 진동의 강도는 클 수 있음

- 시공 전 또는 발파 작업 전에 미리 입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사전고지가 필요했던 상황이나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통지나 양해도 없이 주민들의 면담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

- 현재 400명 정도의 주민들이 공사 피해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려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음

○ 시공사 B 측의 의견

- ○○아파트 민원은 여러 민원 중 하나 일뿐임. 아직은 발파 작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발파 작업 전에 주민들에게 알려 양해를 구하겠음

- 발파 및 소음은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제32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5. 8. 25)

■ 오피스텔 신축 공사 피해 민원인 면담

○ 참석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사, 관리소장, 주민

○ 건축 관계자와의 면담 결과 통보

- ○○아파트 측의 무리하지 않은 요구사항을 검토해 볼 것

-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로 상호 간에 중재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으니 상식적인 수준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줄 것. 또한 입주민들의 개별적인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도록 할 것

제33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5. 8. 31)

■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 교육센터 건립 검토

○ 참석자 :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 교육센터 건립 추진단 운영팀장, 담당 주무관

○ 검토사항

- 시설팀장의 검직과 담당 건축직 직원 1명으로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임

- 본격적으로 시공이 되면 추진단 시스템의 기술직 보강 또는 추진체계의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설계도서 사전 검토의 필요성 : 차후, 불합리한 설계로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등 방지책

- 기타 문제점 논의

제37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5. 10. 6)

■ 마포구민 체육센터 신축 공사 현장 점검

- 참 석 자 : 건축과 건축시설팀장, 담당 주무관
생활체육과장, 담당 주무관
- 2층 종합체육관 바닥공사
 - 받침 시공의 문제점 지적
 - 공사 시공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임
 - 시공사 또는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전반적인 공사의 흐름과 진척 지연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 공사기한 연장 건의 : 시공사가 법정관리상태이므로 인부 동원이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지체상금까지 부과한다면 공사가 중단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준공기한의 연기 문제를 건의 해 달라고 함

■ 서대문구 옴부즈만과 감담회 개최

- 효율적인 옴부즈만 운영 방법 등 상호 간에 정보 교환
-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발전 방향 등 논의

제39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5. 10. 19)

■ 대흥동 6번지 주변 외 2개소 하수관 개량 공사 검토

- 참 석 자 : 치수과 담당 주무관
- 검토내용
 - 공사 장소의 지속적인 변경에 대한 문제점
 - 복잡한 민원관계와 우기 대비 긴급성 등 하수관 개량 공사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계속적인 설계 변경이 발생하고 있음
 - 지하에 다양한 종류의 시설물의 간섭이 있는 점은 이해하지만, 처음부터 마포구 전체에 대한 하수관거망을 가지고 설치 년도, 수량,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하수도관 개량 공사의 연차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함

제41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5. 11. 9)

■ 성산근린공원 생태통로 및 텃밭 조성사업 재고 요청 민원 검토

- 참 석 자 : 공원녹지와 공원팀장, 담당 주무관
- 공원녹지와 의견
 - 15. 11. 3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 여부, 주민협의체를 구성 등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
 - 또한, 15. 11. 16 성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시에 주민 의견 수렴할 예정
 - 사업 추진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임
- 옴부즈만 의견 :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방향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43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5. 11. 23)

■ 성산근린공원 생태통로 및 텃밭 조성사업 재고 요청 민원 검토

- 향후 처리절차 :
 - 공원녹지와와의 협의 : 옴부즈만의 대안 제시 등(구청 내부 의견통일 필요)
 - 민원인들과 면담 : 대안 등 제시 요청 및 검토

■ 마포구 통합백업 시스템 용량증설 검토

- 백업용량 부족에 따른 추가 증설
- 입찰참가자격 검토 필요 : 입찰공고일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1억원(부가세 포함) 구축실적이 있는 업체

제45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5. 12. 7)

■ 성산근린공원 생태통로 및 텃밭 조성사업 재고 요청 민원 검토

- 참 석 자 : 공원녹지와 공원팀장
- 공원녹지와 의견
 - 주민협의체 결정 내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임
 - 15. 12. 10 16:00 성산1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생명의 숲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

■ ○○빌라 공동주택 관리 요청 민원 검토

- 참 석 자 : 주택과 주택관리팀장, 담당 주무관
- 검토사항
 - 현재 관계 법령상으로는 ○○빌라를 공동주택으로 보아 지원해주기는 어려우므로 다른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
 -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 검토, 주택법 개정 요청 등 적극적으로 모색

제47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5. 12. 21)

■ ○○빌라 공동주택 관리 요청 민원 현장 방문

- 민원인 요청 사항
 - 현재 빌라가 노후되고 있어 세대별로 빌라 장기수선금을 걷을 수 있는 방안 강구 요청
 - 법적인 관리 기구가 없어 관리비 걷는 데 애로사항이 있음(지로로 납부 받을 수 없고 동 반장이 세대별로 방문하여 관리비를 걷고 있음)
 - 어린이놀이터 지원 요청(모래 교체 등) 등

03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공공사업”이란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4.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 간에 뇌물 등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계약의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구성·직무 등

제3조(옴부즈만 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할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4조(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3.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상시적 청렴계약 감시·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제5조(직무관할) 옴부즈만이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마포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마포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3. 마포구의 사무위탁기관(마포구의 위탁사무에 한함)

제6조(옴부즈만 상호간의 관계) 옴부즈만은 각각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합의제로 운영한다.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사항
 3. 본인이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신분보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옴부즈만 직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10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은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이하 “신청인 대표”라 한다)가 옴부즈만에게 신청한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

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에 설명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구청장 소속하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5조(고충민원의 반려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반려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의회에 관한 사항
 6.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반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대표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를 안내할 수 있다.

제1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상황의 보고)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4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제21조(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 옴부즈만이 실시하는 청렴계약 감시·평가(이하 “감시·평가”라 한다) 대상은 공공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을 포함하며, 그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료제출 및 요구) ① 감시·평가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감시·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옴부즈만에게 심의자료와 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관련 부서장에게 감시·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운영계획의 수립) 옴부즈만은 매년 감시·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 활동범위를 정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장 운영지원 등

제24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03 마포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ombudsman) ① 대표ombudsman은 ombudsman을 대표하고, ombudsman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ombudsman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ombudsman이 미리 지정한 ombudsman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3조(고충민원 신청·접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ombudsman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완료 및 기한 연장 통지) ombudsman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하거나 그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신청인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서약) ombudsman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제시) ombudsman이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표의 ombudsman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권고 및 의견 표명 방법) 조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시정·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관련 법령·제도·정책·처분 등의 현황 및 문제점
3. 시정·제도개선 권고, 의견 표명 내용
4. 그 밖에 ombudsman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범위) 조례 제21조에 따른 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총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의 공사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구매

제9조(청렴계약 감시·평가 자료제출) 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라 관련 부서장은 감시·평가 대상목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제10조(수당지급) 조례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옴부즈만 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일 1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제11조(공인) 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015년 마포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

발 행 일 2016년 3월

발 행 인 마포구 옴부즈만

주 소 마포구 월드컵로 212

전 화 02-3153-8184

홈페이지 www.mapo.go.kr
